###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육성과제

[심포지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초청의 말씀

###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육성과제」

안녕하십니까? 최근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인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 방식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충청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컨설팅을 담당하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첫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충남형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모색을 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와 충남형사회적기업 활성화를 고민하는 소통의 장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첫 발걸음을 내딛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15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 진 도

### / / / / /

◆ 주 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육성과제

◆ 일 시 : 2011년 2월 15일(화) 14:00-16:40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1층)

◆ 주최·주관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후 원 : 충남발전연구원

### ♣ 심포지엄 일정

◆13:30-14:00 등록 및 접수

◆14:00-14:10 인 사 말 **박진도** 원장(충남발전연구원)

◆14:10-14:20 센터소개 **송두범** 센터장(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14:20-15:00 **제1**주제 발표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현실과 발전과제

발 표 자: 김성기 박사(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14:20-15:00 제2주제 발표 충남형사회적기업의 육성전략 및 과제

발 표 자: 이은애 단장(Seed's 혁신지원사업단장)

◆15:00-15:30 센터 개소식

◆15:30-16:30 지정 및 종합토론

좌 장: 류동민 교수(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토론자: 권회대 실장(충청남도 경제통상실)

유정규 이사(지역재단)

김제선 이사(풀뿌리사람들)

김성훈 이사(민들레생협)

박찬무 대표(즐거운 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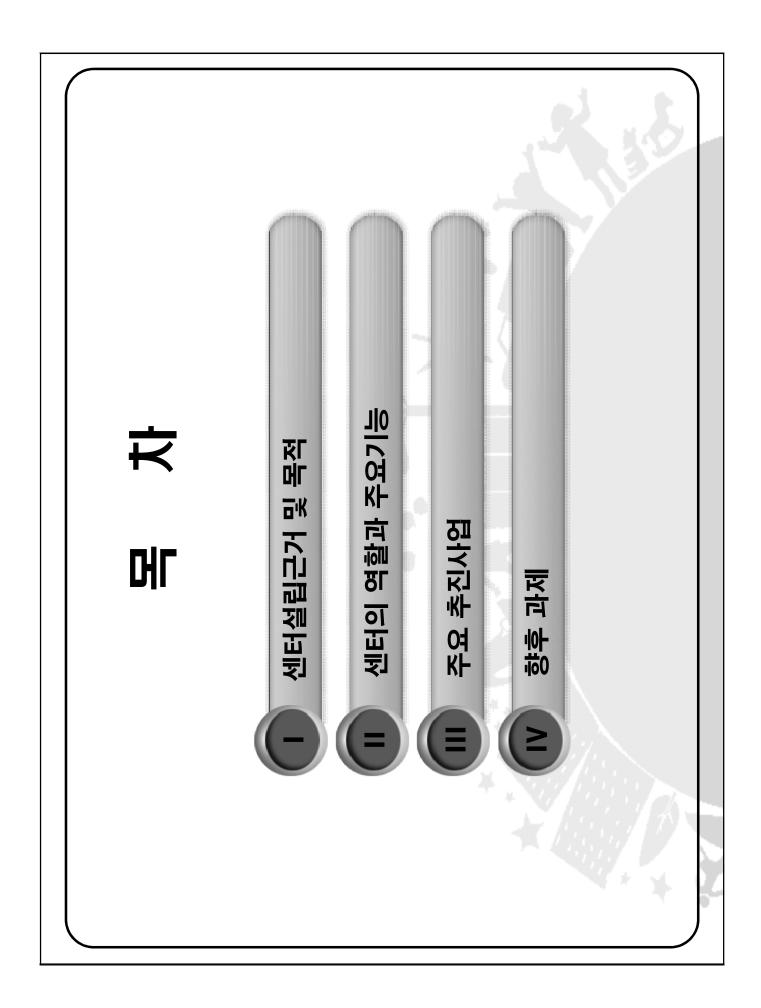
◆16:30-16:40 종합정리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개

송두범(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 센터설립근거 및 목적

### ● 설립근거

충청남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전문지원기구 설립)

충남도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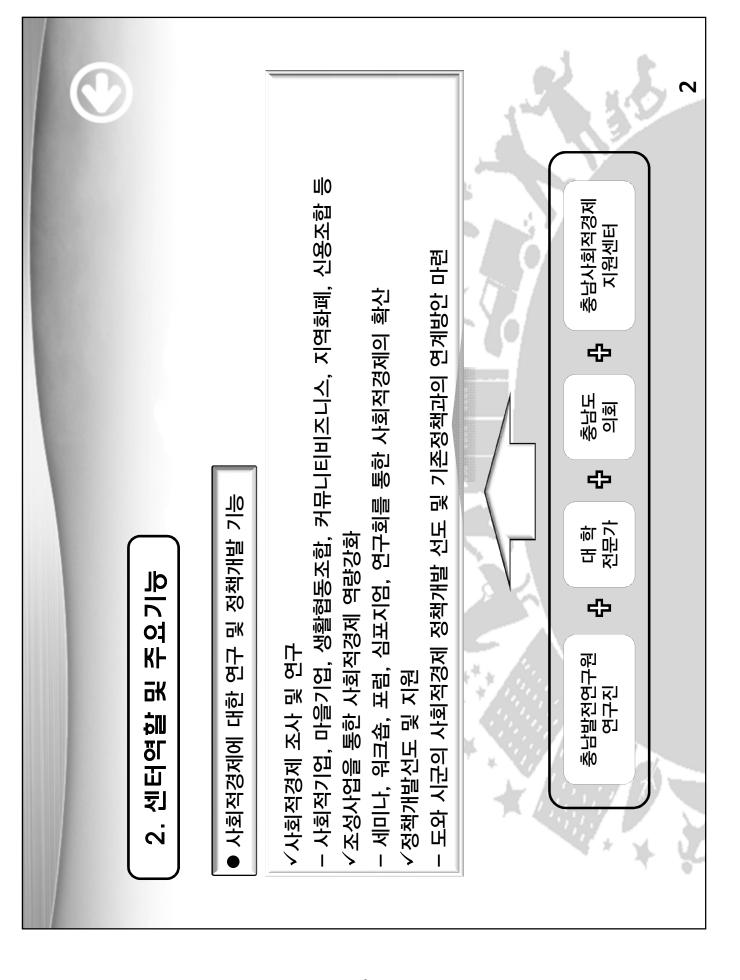
충청남도와 협약체결(2010.12.22)

### 설립목적

사회적경제영역의 기반확충 및 저변확대를 위한 조사, 워크숍, 연구, 네트워크를 순환과 공생에 기초한 커뮤니티 조성(광의)

쏊

✓충남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발굴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컨설팅(협의)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시책의 통합적 지원 및 조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기반 구축



### 3. 자요추진 사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 ■ 충남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목적)사회적경제영역 강화 위한 실태분석 및 실천방안 모색 통해 지역의 내발적 발전 지역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실현 (내용)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론검토, 국내외 정책 및 사례분석, 충남의 사회경제실태분석,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 (추진방법)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로 추진, 부서간 협력,

## 조성사업 통한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목적)사회적경제 활동 참여자들이 교류하고 학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

(내용)사회적경제 분야(생활협동조합, 지역화폐,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포럼 개최

싸 권 어 왕 이 달 (추진방법)충남발전연구원~센터~전문가~시민단체 등이



### 3. 주요추진 사업

충남형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기능

## ● 예비사업자의 발굴 및 진입지원

✔(목적)예비사업자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모델 컨설팅을 통한 충남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의 진입지원

✔(내용)지역자원의 발굴, 아카데미, 예비사업자를 위한 (현지)상담 및 컨설팅, 센터내 상시 상담 및 컨설팅 창구 마련

(추진방법) 센터-전문컨설팅기관과 공동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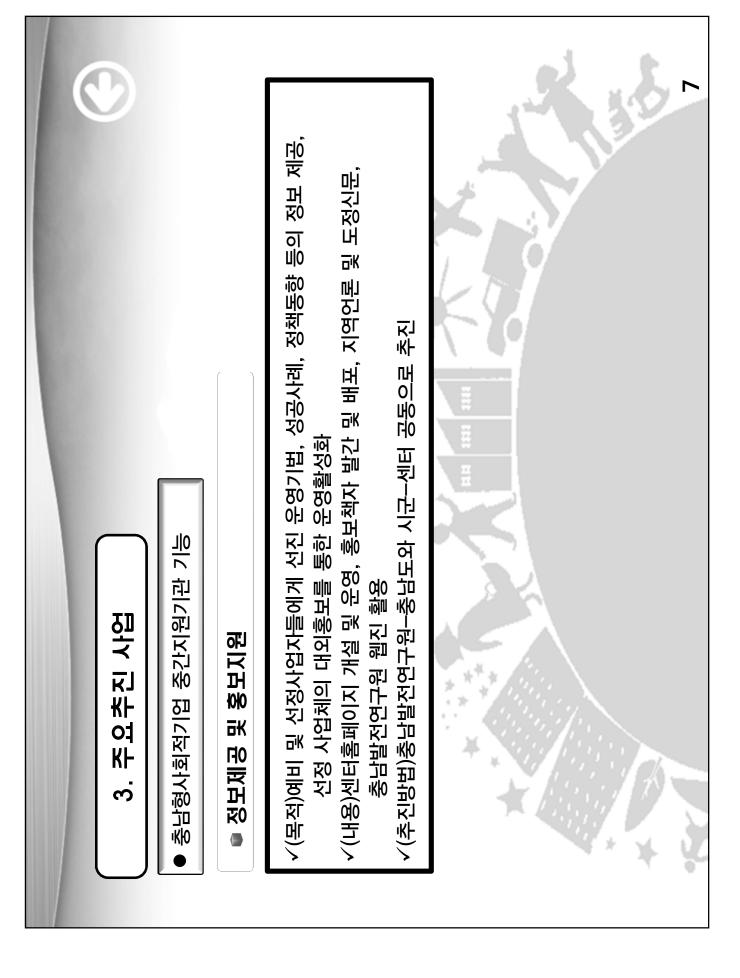
## ■ 선정된 사업자의 성공모뗄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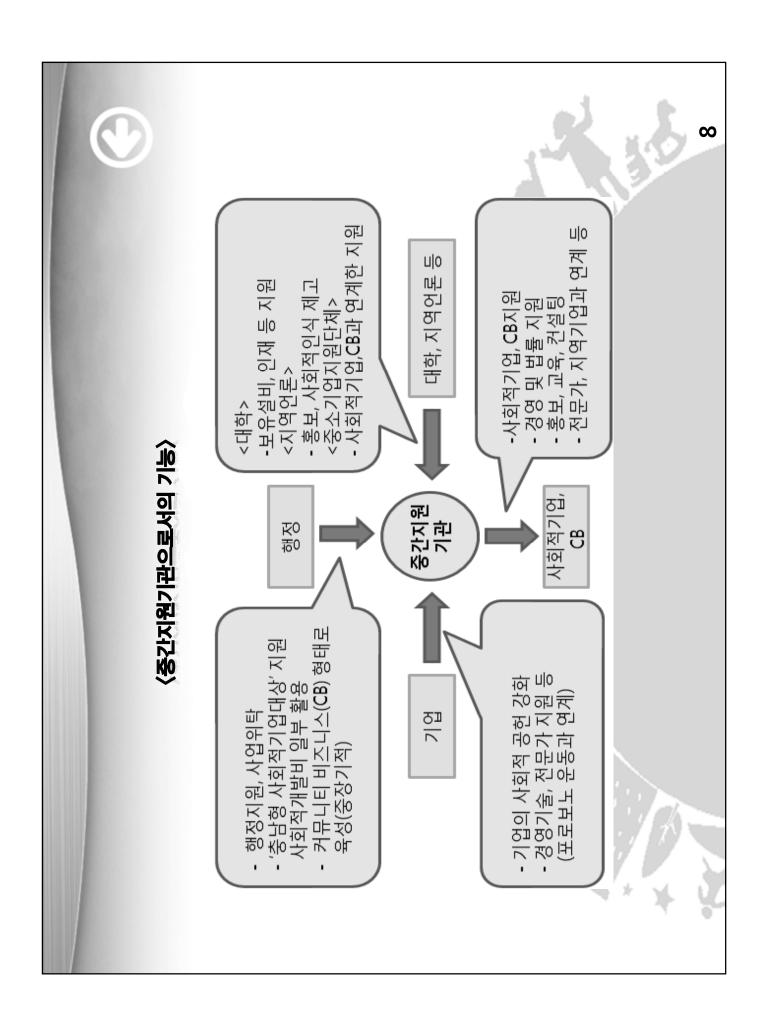
✓(목적)충남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과 사업성 제고를 운영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위한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내용)정기적 사업장 방문 컨설팅, 센터내 상시 경영컨설팅 지원, 으로 진입 프로그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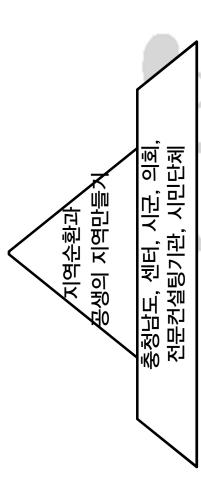
′(추진방법)센터-전문컨설팅기관과 공동으로 추진

ဖ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연구 및 정책개발

-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 조성사업 통한 역량강화
  - 정책개발 선도 및 지원

### 중간지원기관

- 선정사업자 성공모델 창출 ■ 예비사업자 진입지원
-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공동체, 지역화폐 등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 13 -

### 4. 양후과제

### 연구 및 정책개발

0평 너0 랆 ✓사회적경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연대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재원 확보 센터, 도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연구모임 구성 현안과제 수행 / 사회적경제 연구에 대한 충남도와 시군의 관심 증진을 위한 충남도와 시군에 대한 사회적경제 분야 시책 발굴 및 제안 충남도와 연구원,

### 중간지원기관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총괄관리 할 수 있는 중간지원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함양 진입확대 ✓ 마을기업은 충남형사회적기업, 충남형사회적기업은 노동부사회적기업으로 ✓전문컨설팅기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성공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센터업무의 전문화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학습기회 확대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지원 제 ] 주제

### 지역사회'사회적경제'현실과 발전과제

김성기(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박사)

###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발전 과제

###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의 현실을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한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신명호(2009)의 개념을 적용한다. 그에 따르면, 우선, '사회적기업은' 공공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의미 한다. 한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제시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 용을 창출하거나 그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 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 념 규정은 사회적 목적의 범위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국한하는 문제가 있고, 인증 사회적기업만을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그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화폐적, 비화폐적 자원의 생산, 소비, 분배, 교환 등을 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호혜적 경제 부문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이라 함은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경제활동 조직인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영리 민간단체 중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에서 생산 영역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영환(2009)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목적을 공유하면서 잠재적인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기업의 원천이 되는 조직의 의미를 갖고 있다.이 글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포괄하여 논의를 진행하되, 사회적기업에 중심에 둘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을 위시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계기로 태동하여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특히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정부 주도로 발전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중점을 두었는데, 2010년 12월 현재, 전국에 502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으며<sup>1)</sup>, 대략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개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나 지역화 전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의 경우는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요구도 한 요인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지역사회 차원의 커다란 과제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공급 등의 확대이기때문이다. 끝으로 민간 주체의 경우도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개별 분산된 형태로 사회적기업 운동을 추진해오던 것에서 보다 발전적 성장을 위해 네트워크의 구축이나 실천 전략의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발전 초기 단계인데, 사회적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수립이 중요한 이슈이다. 이와 관련되어 정부나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의 우호적 정책 개발, 경영지원, 모범 사례 개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안의 핵심에 지역사회 중심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전적으로 부합한다.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낙후된 지역사회 개발 등 커뮤니티(commun ity)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다. 여기서 커뮤니티는 지리적 지역사회이자 그 안의 공동체(지역주민)를 의미한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자신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지리적 위치가 바로 풀뿌리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 전략은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모든 사회적기업은

<sup>1)</sup>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웹싸이트 'www.socialenterprise.or.kr'

지역사회형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가게', '교보다솜이' 등이 있고, 그들의 활동성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활공동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혁신적으로 개발된 사회적기업이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모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역량에 기반을 둘 때 보다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기업 개발은 지방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며, 각 각의 노력이 병행되고,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공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여기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기업의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발전의 지역사회적 의미를 확인한다.

둘째, 지역사회 사회적기업의 현실과 잠재력을 살펴볼 것인데, 여기서는 남양주시의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기초지자체 사례를 검토하는 이유는 전국이나 광역 차원의 실태를 확인(물론 이와 관련된 자료가 매우 취약하기도 하다)하는 것 보다 한 지역의 구체적인 발전과정과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 더유용할 수 있다. 또한, 남양주시는 도·농 복합도시이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갖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사례(2010년 10월 기준, 9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음)이기 때문에 발전 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끝으로, 사회적기업의 발전 과제에 대해 지방정부의 과제와 민간의 과제를 구분하여 제시할 것이다.

### 2.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업의 의의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서구 유럽과 달리 국가복지가 성장하는 국면에서 사회정책이 주도하면서 정부주도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의 관심은 대단히 역동적이며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 사회적기업가(social entrepreneurs)의 활동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관심은 대안적 사회, 대안적 경제를 구축하려는 흐름과 복지국가의 혁신적 발전이라는 가치,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복원 등 다양한 의미가 병행하면서촉발되고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 운동은 칼 폴라니(K, Polanyi, 1994)가 지적했던 호혜적경제의 가치, 즉 자본 소유에 기초한 승자독식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참여를 바탕을 둔 공동체 경제를 구축하는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기업은 시장경제가 주는 폐해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사회적 경제의 구축'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이영환, 2009).

둘째, 사회적기업은 국가가 재검토해야하거나 이전에 없었던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이니셔티브(initiatives)라는 점에서 국가복지의 발전에 기여한다. 취약계층의 재활과 노동을 통한 소득보장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노동통합 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2), 공공과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소득이전 정책과 공공 서비스에 의존하던 기존 국가복지 체제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와 사회적 자원동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있다. 이영환(2009)이 언급했듯이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은 지역 안에 있다"는 관점은 사회적기업의 발전 동학이 소유에 근거를 둔 일반 기업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

'참여와 동원'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공동화(空洞化)되고 있는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확장에도 기 여할 수 있다.

<sup>2)</sup>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노인, 근로빈곤층 등 노동 취약계층의 직업훈련과 노동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주민(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의 구축과 해체되어가는 지역공동체의 재생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의의 를 갖고 있다.

### 3. 지역사회 사회적기업의 현실: 남양주시 사례

이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바 대로 남양주시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과 실태를 살펴본다.3).

남양주 사회적기업 운동은 1980년대 후반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농업 생산자 협동조합 운동(팔당생명살림 영농조합법인 등)이 태동하면서 출발하였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실업극복운동, 자활운동 등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기업 운동이 등장하였다. 최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실천이 결합되면서 남양주 사회적기업은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국면에 접어드는 중이다4). 구체적으로 2010년 현재 남양주 사회적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면 (<표-1> 참조), 사회적기업의 수는 9개5), 총 유급근로자의 수는 166명, 총경제규모는 약 120억 원 등으로 아직까지 그 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잠

<sup>3)</sup> 필자(2010b)의 "남양주시 공공자원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개발 방안 연구"에서 참조한다.

<sup>4)</sup> 사회적기업에 대한 남양주시의 관심은 2009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남양주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의 활동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9년 9월에 '남양주 사회적기업 육성 및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남양주시는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2010년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행정 기반 조성, 지원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남양주시는 사회적기업 전담부서로 '사회적기업 지원팀'을 2010년 8월에 신설하였고, 남양주시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개최, 사회적기업 지원 센터의 설립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과정은 '남양주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민)와 '지방정부'(관)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이후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비영리조직들이 사회적기업 운동의 참여로 연결될 경우 본격적인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기업이 발전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sup>5) 2010</sup>년 10월 현재, 남양주시에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폐자원 재활용 사회적기업 '에코그런'(자활공동체 기원), 아동급식 제공 목적의 사회적기업 '남양주 샬롬의 집 행복나눔 도시락 사업단'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 기원), 근로 빈곤층 일자리 창출 목적의 청소 사회적기업 '일과나눔'(자활공동체 기원), 컴퓨터 재활용 사회적기업 '한국컴퓨터재생센터(일반기원 기원)' 등 4개가 있다. 또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회적기업 '팔당생명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기원)', 노인 일자리 창출 목적의 사회적기업 '남양주 시니어클럽 두부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 기원)', 아동문화 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남양주 여성지원센터의 장난감놀이학교 사업단(비영리단체 기원)', 여성 일자리 창출 목적의 사회적기업 '남양주 평생교육문화센터의 나전칠기사업단(비영리단체 기원)', 장애인 사회적기업 '(사)해밝음장애인복지회(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원)' 등 5개가 있다.

재적인 사회적기업이 약 1,000개 정도6가 있어 그것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양주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 능성이 보완되어야 하고, 상당한 규모의 잠재적 사회적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개발되어야하는 과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다수 지역의 경우도 비슷할 수 있는데, 실제는 남양주 지역의 경우보다 발전이 더딘 상황일 것이다. 이러한 남양주 지역의 사례로부터 지역사회가 사회적기업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양주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는 환경 분야, 제조업 등이 있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와 농업·농촌 관련 분야는 저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 면, 사회적기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잠재력을 가진) 사회복지 관련 조직과 농업 관련 조직 등이 상당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을 개발 할 경우 사회복지 관련 정책 및 농업, 농촌 관련 정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표> 남양주 지역의 잠재적 사회적기업 규모 추계

| 구분(기준년도)              | 남양주 현황  | म) ज  |
|-----------------------|---------|---|
| 인증 사회적기업(2010)        | 4       | -   |
| 예비 사회적기업(2010)        | 4       | 5개 예비사회적기업 중에<br>팔당소비생협을 제외한 수치임.               |
| 자활공동체(2010)           | 0       | 남양주 지역자활센터의 5개<br>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br>'일과나눔'으로 전환함. |
| 자활근로사업단(2010)         | 5       | -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2010)    | 37      | -   |
| 영농조합법인(2007)          | 30      | -   |
| 농업회사법인(2007)          | 4       | -   |
| 협동조합[의료생협+소비생협](2010) | 1       | 팔당소비생협  |
|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비영리 단체   | 947     | -   |
| 계                     | 1,0327} |   |

<sup>\*</sup> 자료: 김성기(2010b)의 "남양주시 공공자원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개발 방안 연구". 여기에 제시된 현황은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함.

<sup>6)</sup> 아래 표는 남양주 지역 사회적기업의 잠재적 규모를 추계한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이 영환 외, 2010; 엄형식 2008 등), 이와 관련된 범주로 인증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소비자협동조합, 사회복지 관련 시설, 비영리 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 추계치는 각 범주별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아주 엄밀한 것은 아니며(예를 들면,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수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에는 중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범주 설정에 따라서 그 규모가 더 늘어날수 있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을 수 있다.

지원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주체의 경우도 이런 분야의역량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을 개발하는 노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1> 남양주 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

| 구분           | 실태 및 특성              | 분석 결과  |
|--------------|----------------------|--|
| 발전 장 및<br>현현 | 사회적기업<br>운동의<br>발전과정 | · 농업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운동과<br>실업운동 및 자활운동 등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 운동이 발전하고 있는 중<br>·한국 사회적기업 운동의 보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도농복합<br>도시 특성이 반영되어 농촌형과 도시형 사회적기업이 공존하는<br>특수성도 갖고 있음.   |
|              | 규모                   | <ul> <li>· 총 사회적기업의 수: 9개</li> <li>- 유급근로자 고용 규모 총 166명</li> <li>- 총 경제규모 11,923백만 원</li> <li>· 잠재적 사회적기업의 수: 약 1,000개</li> </ul>  |
|              | 발전경로                 | <ul> <li>정책연계형 발전 유형이 7개로 다수</li> <li>자활공동체, 노인일자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li> <li>정책비연계형에서 설립되어 정책연계형으로 발전하는 유형이</li> <li>2개</li> <li>일반기업, 소비자협동조합 기원</li> </ul>   |
|              | 사회적<br>목적            | <ul> <li>취약계층 노동통합형 9개 중 6개(혼합형 포함)</li> <li>사회서비스 제공형 4개(혼합형 포함)</li> <li>지역공동체 개발형 2개</li> </ul>   |
| 특성           | 조직형태                 | · 비영리조직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6개<br>· 주식회사의 경우는 3개  |
|              | 사업분야                 | · 환경사업 분야, 제조업 분야에서 개발이 되어 있지만, 사회서비<br>스 분야, 농업, 농촌 관련 사회적기업이 저개발되어 있는 상황.  |
| 가치<br>창출     | 사회적<br>가치            | <ul> <li>고용 규모: 총 166명, 기업 당 평균 18.44명</li> <li>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비율이며, 연령별로 30세 이상 ~ 50세 미만이 다수(70.5%)</li> <li>·취약계층 고용 창출: 89명(전체 유급근로자의 53.6%)</li> <li>·노동조건</li> <li>고용안정성이 문제,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 다수(73.5%)</li> <li>임금은 저임금(정규직의 경우 약 130만원, 비정규직의 경우 최 저임금 수준)</li> </ul> |
| ´o´ė         | 경제적<br>가치            | ·연간 총 수입액은 11,923백만 원, 기업 당 평균 1,324백만 원. · 자원동원 특성 - 시장자원의 동원: 90.2%(단, 공공시장 자원의 동원은 9.4%로<br>경기도와 전국의 상황과 비교해서 낮은 편임.) - 정부지원 자원: 8.0% - 호혜적 자원: 1.8%(낮음)  |

<sup>\*</sup> 자료: 김성기(2010b)의 "남양주시 공공자원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개발 방안 연구". 여기에 제시된 현황은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함.

다음으로 남양주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급근로자의 절반 가량을 장애인, 노인, 여성, 근로 빈곤층 등 취약계층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일반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영역에서 자원을 동원하면서 총 120억 원 규모의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지점도 있다. 우선, 남양주 지역의 사회적기업은 고용안정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에 단기계약직이 많고, 일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종료에 따른 고용조정을 앞두고 있는 등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의 문제도 안고 있다. 남양주 사회적기업은 주로 일반경쟁시장에서 자원을 획득하고 있는데, 시장 경쟁력에서 밀릴 경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시장의 개발과 지방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인건비, 시설 및 부지의 무상임대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공공시장을 확보하면서 경제적 안정성을 획득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된 방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2009년 이전까지 남양주 사회적기업은 지방정부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대다수 지역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직전에 언급했듯이 지방정부가 공공자원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을 위한 어떤 개발 전략을 수립할지가 관건 중 하나이다. 물론 민간 주체들의 자율적이고, 자립적 토대를 창출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 4. 지역사회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및 과제

이 절에서는 지역사회 사회적기업의 발전 과제에 대해 지방정부와 민간 주체의 과제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제시되는 과제가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는 대부분 광역 및 기초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데, 어떤 경우는 각각에만 해

<sup>7)</sup> 남양주 지역의 인증 사회적기업인 '에코그런'과 '남양주 행복도시락'의 경우는 2010년 현재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5년 째 하고 있는데, 문제는 더 이상 이 사업에 참여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에코그런'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19 명(총 유급근로자 63명)인데, 2010년 12월 이후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는 상황이다. 또한, '남양주 행복도시락'의 경우도 2011년 6월 이후 18명(총 유급근로자 2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다. 이러한 상황은 남양주 지역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며, 전국에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들이(특히,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들) 공통적으로 겪는 위기이다.

당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주로 2010년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된 『경기도 사회적기업 발전 전략 연구』를 참조한 것이다<sup>8)</sup>.

### 1) 지방정부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과제

- (1) 기반 조성 정책
- ① 비젼과 목표 설정에 입각한 종합적 발전전략 수립 필요

지방정부는 사회적기업 정책의 비젼으로 앞서 확인한 대로 '사람 중심의사회적 경제 구축'이라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사회적기업 개발의 목표 설정과 종합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같은 『(가칭)00지역사회적기업 종합 발전 5개년 계획(2011년~2015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영국 브리스톨시의 경우》 2001년에 지방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경제개발프로젝트'를 수립하면서, '① 사회적기업을 통한 5%의 고용 창출, ② 사회적기업을 통한 재화 및 서비스 공급률을 5%로 증대, ③ 사회적기업 민간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총론적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는 지역경제개발, 컨설팅, 자금 조성, 네트워크, 교육·훈련 등 18개의 정부 정책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김성기, 2008).

### ② 사회적기업 지원 기반 조성: 전담부서 설치, 지원 센터 설립 등

첫째, 사회적기업 전담부서는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면서 부처 간 협의조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대다수 지방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전담 부서는 주로 고용 관련 부서가 맡고 있는데, 별도의 독립

<sup>8)</sup> 연구진에 책임연구원 이영환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공동 연구원으로 필자 외 장원 봉(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엄형식(벨기에 리에쥬대학교 사회경제센터 연구원), 김동언(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원) 등이 참여하였다.

<sup>9)</sup> 브리스톨 시에서 운영하는 SEB(Social Economy Bristol)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브리스톨의 사회적 경제 단위의 총매출액은 연간 223백만 파운드이며, 전체 브리스톨 GDP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1,000개 이상의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9,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여기에 21,600명의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김성기, 2008).

적인 부서가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주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칭)00 지역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은 ① 지방정부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② 지방정부가 민간 지원조직에게 위탁을 하는 방안, ③ 지역사회 사회적기업협의회 등 민간 사회적기업 지원 조직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 간 협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개발의중심적인 역할은 기초지자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지원하고 조정해주는 역할에 방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광역지자체는 범 지역 차원에서 지방정부 간 사회적기업지원 및 개발을 협의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가칭) 00지역 사회적기업 개발을 위한 지자체장 협의회』, 『(가칭) 00지역 사회적기업 부서 간 협의회』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③ 민간 및 민·관 파트너십의 개발 및 활성화

첫째, 민·관 협력적 사회적기업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대다수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거버넌스(협치기구)는 지역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육성위원회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에서 맡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도 행정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육성위원회가 좀 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개편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의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처럼 민관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민간 위원장의 경우는 사회적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추천을 통해 임명하는 '추천 위원장 제도'를 검토할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관 파트너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이 동반되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현장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조

직)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대다수 지역사회에서(특히 광역 차원)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은 외부 자원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현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 자원들이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지역의 역량이 취약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해법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것이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그래서 지방정 부가 해당 지역의 민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칭) 00지역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 데,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잠재적 사회적기업과 기존 사회적기 업 간의 멘토링 사업, 공동의 판로개척 사업, 업종별 네트워크 사업, 소지역 별 사회적기업 단지 조성 사업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④ 간접지원정책의 강화: 공공자원의 실질적 활용 정책 개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현장 사회적기업이 정부나 지방정부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정책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구매제도의 실질적 시행이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를 지원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 사항에 관한 규정,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에 관한 조항,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조항 등에 사회적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법적이 실효성이 미약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자체 공공자원을 활용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사례로 경기도의 '1행정부처 - 1 사회적기업 결연사업'이 있다. 보다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선, 이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치'를 연차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결연사업은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주관부서가 실질적으로 주관하여,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목표치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점검,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 2) 사회적기업 개발 지원정책

### ① 사회적기업 발전 단계별 지원정책

### 가. 진입을 위한 지원정책

사회적기업의 발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진입시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 건으로 사회적기업가의 경영능력, 지역사회 자원 동원 능력, 시설과 자본금, 생산 및 판매 능력 등이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통해 사회적기업가의 경영 능력 제고와 지역사회 자원 동원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역사회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생산 및 판매 능력을 갖춘 '규모화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다양한 자본지원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며 융자와투자를 모두 병행하는 지역사회기금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 나.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

성장지원 정책의 중요 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들인데, 우선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여 수준별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립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처한 사회적기업 등으로 각각의 사회적기업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처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T/F를 설치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기서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관련된 생산 및 판매 대책을 수립하고지원하는 것이다.

#### ②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지원정책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지원정책은 사회적 목적별로 사회적기업을 특화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일자리 창출형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③ 지역공동체 개발형 사회적기업 ④ 혁신형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자리 창출형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이다. 관련 연구에서 확인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의 지원정책에서 핵심적 이슈는 '취약계층의 범위'와 '지원 기간'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정책 대상의 범위를 노동통합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한정하면서 고용보조금과 같은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10). 또한, 이러한 정책의 개발은 노동통합과 관련된 고용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이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핵심 이슈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처의 확보이다. 특히, 사회정책과 연계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분야 사회적기업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은 사회적 일자리, 바우처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서비스 위탁 사업(복지시설, 복지서비스, 행정서비스 등)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공동체 개발형 사회적기업의 개발이다. 지역공동체 개발형은 의료생활협동조합처럼 커뮤니티 구성원의 참여에 의해서 설립되는 사회적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을 의미한다. 기존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서 이러한 커뮤니티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적

<sup>10)</sup>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자립하여 양적·질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을 위해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취약계층 고용 범위의 설정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며, 이를 위한 지원 정책도 직접 지원정책 중심으로 설계할지 아니면 간접지원 정책에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범정부 차원에서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을 정책적 육성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에 대한 대안은 중앙 정부가 보조금, 인건비 지원 등 직접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맡고, 지방정부는 판로지원, 우선구매 등 간접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역할을 맡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 여력이 있다면 독자적으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도 있다.

과제 수행형 프로젝트 방식으로 지역공동체 개발형 사회적기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청년과 은퇴한 시니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 혁신적 사회적기업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아쇼카재단의 사례를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아쇼카 재단의 경우 사회적기업가(social entrepreneurs)가 해결하고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그를 위한 기금을 사회적기업가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 ③ 기초지자체와 연계한 '사회적기업 모델 도시'의 개발

최근 기초지자체의 사회적기업 개발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도시차원의 사회적기업 개발 정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사업은 시범사업 차원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전략은 각 기초 지자체의 지역사회 문제와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사회적기업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도시개발은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처럼 지역기업 활성화 운동(외부 자원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개발이 아니라주민의 참여에 의해 지역자원을 개발하는 방식,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한 완주군의 사례처럼 지원조직을 중심으로 개발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사회적기업 민간 주체의 발전전략

#### (1) 사회적기업 설립 시 필요한 전략

상당수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의 설립에서 '사회적기업가'가 핵심적 성공요 건으로 황인되고 있다. 비영리조직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때 전문성과 책 임성을 겸비한 사회적기업가를 준비해야 한다. 물론 사회적기업 스스로 내 부 역량을 개발하면서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결합한다면 더욱 지 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사회적기업 사업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지역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이라는 가치 창출에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도 농복합적 지역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고, 문화, 생태, 도시재생, 이주민 영역 등 변화하는 도시 특성과 다양한 지역사회 필요를 사회적기업 방식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전략: 설립, 확장기에도 적용됨.

첫째, 사회적기업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중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은 이용자(소비자)의 집합적 참여에 의해서<sup>11)</sup>, '팔당생명살림 영농조합'은 생산자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sup>12)</sup> 성공잠재력을 키워나갔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사회복지, 교육, 간병·가사 등 대인서비스 사회적기업의 발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업종별 또는 기초지역 내에서 사회적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은 공공시장은 물론 지역사회의 연계 조직과 사회적기업간 협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청소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세상'의 경우 청소 유통업을 하는데, 전국의 자활청소사업단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재활용 사회적기업인 '한국컴퓨터재생센터(KCR)'의 경우도 지역 내 동종 업종인 '컴윈'과 협력하여 경기도의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것이 매출 확대로 연결되었다.

셋째,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은 한시적 지원 정책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아닌 다른 안정적인 공공정책을 다양하게 공략할 필요가 있다. 구체 적으로 신규 바우처, 장기요양보험 등 신규 공공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sup>11) &#</sup>x27;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은 2009년 현재 조합원이 3,150 세대이며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거의 매년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김성기, 2010a).

<sup>12) &#</sup>x27;팔당생명살림 영농조합'의 2009년 현재 연간 총 수입은 약 36억 원 규모이며, 모두 농산물 판매에 의해 확보된 것이다. 2009년 전국 영농조합법인의 평균 총수입은 12억 원인데, 이의 3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농산물 공동 유통에 참여하는 영농조합원은 96명(농가)이다(이영환 외, 2010).

넷째, 사회적기업은 비물질적 보상체계를 강화하여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이 노동조건 관련 연구(이영환 외, 2009; 이영환 외; 2010 등)에서 확인된 종사자 특성은 30대 이상의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있는 사회 복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종사자의 다수가 단기 계약직인데, 사회적기 업 차원에서 정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고,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이를 현실화하고 지속화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저임금의 문제는 지불능력이 허용하는 선에서 임금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지만, 사회적기업이 단시간에 영업활동 능력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임금인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교육·훈련, 재충전(여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 비물질적 보상체계의 확대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앞서 강조했던,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간 협력은 민주적 경영과 협동적 조직 문화를 전제로 한다. 주지하듯이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신뢰와 협동에 기반을 둔 자치 조 직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조직 내에 실제 화 되도록 이사회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개방하며,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획득을 위한 주체적 요인 중 사회적기업가의 전문성 및 책임성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대 조건이다. 결국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이 두 개의 조건을 어떻게 지방정부의 지원정책과 결합하여 실천 속에 잘 녹여낼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끝』

#### 참고문헌

- 김성기. 2008. "브리스톨 지역 사회적기업 사례 및 함의". 『영국 브리스톨 지역 사회적기업 연구보고서』.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 김성기. 2010a.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연구: 다중 이해당사자 참여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성기. 2010b. 『남양주시 공공자원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개발 방안』. 남양주 지역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호.
- 엄형식. 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재)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 이영환. 2009. "한국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과제 및 제도화의 문제". 『2009년 사회적 경제 활동가 대회 자료집』.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이영환·김성기·김종진·이정봉·황인매. 2009. 『사회적기업 노동실태 연구』. (재) 함께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워.
- 이영환·김성기·엄형식·장원봉·김동원. 2010. 『경기도 사회적기업 발전 전략 연구』. 경기복지재단.
- 홍기빈 역, 2009, 칼 폴라니(1944),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길.

| - 34 |
|------|
|------|

**M2** <del>F</del>**M** 

#### 충남형사회적기업 육성전략 및 과제

이은애(Seed's 혁신지원사업단)

### 충남형사회적기업 육성전략 및 과제 (사)Seed:S 혁신지원사업단장 경원대 사회적기업대학원 겸임교수 **이은애** seed:s

#### 阿阿阿 야 소 소 1. 충남도 사회적기업





Community Business Social Enterprise **Social Business** SE+CB-SB

무심

뺠 섫 슟



# 1. 충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 2009. 12 충남발전연구원

육성전략 연구

- 사회적기업 욕구조사 및 전환의지 조사, 일반인 의식조사 실시

- 충남과 시군의 역할모형 개발 및 육성 전략 제시

#### 볆

#### 충남형사회적기업 200개 육

₹0

####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 >

#### 나 저 세구구인되시

세부추진과제

추진전략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단계적 전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연계 발굴

지 역 밀 착 형 사초적기업발굴 4. 사회적기업가 발굴

3. 지역자원활용형 사회적기업 발굴

1. 전문 지원기구 설립

2. 사회적기업협의회 구성운영 3. 사회적기업 전담부서 설치 4.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

사회적기업 육성인도가구축 (육성단계) 사회적기업 경영활동지원

(사립단계)

.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서비스

2.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서비스 위탁 확대

도내 대기업과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을 통한 지원 민간의 사회적기업 생산품 소비촉진

연장가능

통해 1년

※ 심사를

지원기간

활동가, [별도공모 예정, 도비50%, 시군비 50%) 등록세 50%감면 (2년) ᅜ 선배 사회적경제 충남형 사회적기업 및 이자보전 월976천만원/인 (최대 10명) фO 최고 3천만원 (연리 2%) 네O 뺁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신용보증 컬설팅기관 월 150만원 \* 1명 민간 중간지원체, 재산세, 취득세, 80 87 97 2011년 퍼品마 재정 1년, 2년이내 씱 Ж 일반직원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경영컨설팅 시설비융자 사업개발비 세제지원 바 의 외 프



# 1. 충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④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운영방향

## 센터의 역할과 기능\_ 기업가의 요구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금조달, 사업전반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 강조

| FIGH         | O E C K   | 2 In | 비중(%) |
|--------------|---|------|-------|
| 시원사업         | 육바珔스  | 1순위  | 2순위   |
| 정보공유         | 사희적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br>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소식, 제품정보 제공 등          | 0.0  | 12    |
| 교류촉진         | 사희적기업 관련자(행정, 기업, 주민, 기업가 등)와의 다양한 교류 촉진<br>소비자, 후원기업 등과의 교류 촉진 | 1.2  | 8.4   |
| 자금 조달 지원     | 설립·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기부·보조금 등 획득 지원<br>기업자금 융자·조성, 금융기관 소개 등        | 26.2 | 16.9  |
| 시설·비품 제공     |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지원 등   | 7.1  | 9.6   |
| 인재육성지원       | 사업추진, 영업활동, 사회적기업에 대한 강좌교육 개최 등                                 | 1.2  | 4.8   |
| 코디네이터 지원     | 사업 전반에 관한 전문적 컨설팅, 판로개척 등 소개 알선(허브 기능) 등                        | 25.0 | 7.2   |
| 상담 참구        | 기업활동과 사회적기업 인증 등에 관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                                 | 8.3  | 4.8   |
| 기업지원         | 법인설립 지원(법인격 취득, 정관작성 등)<br>신규 사업아이템 발굴 및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 8.8  | 9.6   |
| 운영(경영) 지원    | 경리·세무·재무·희계·법률 등 지원(서류 작성 등 )<br>홈페이지 작성 지원 등                   | 13.1 | 25.3  |
| 사업 전개 지원     | 영업 마케팅 지원, 경험에 근거한 경영노하우 지원<br>언론 홍보(PR 지원) 등                   | 5.6  | 12.0  |
| 조사연구<br>정책개발 | 사희적기업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평가 표창 등                                      | 0.0  | 0.0   |

조사항목은 선진사례를 통해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을 정리한 것임



## 1. 충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④ 충남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운영방향

#### 역할과 기능\_ 2011년에 해야 할 설 디 디

선 교 교 단계별 밀착형 교육: 마을만들기 등 기초 포럼 및 홈페이지 운영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작, 육성전략 수립, 펀드조성 및

<u>혐의체 구성</u> 포럼(네트워크) 홍보, 로그 공모 정보발신) Network

제작(제품디자인에 활용)

武

ШО 홈페이지 컨텐츠개발 및 시범운영 항 故 校上

자치단체장 선진지 답사(일본 등 컨설팅·교육 Education

바리 사업 선정자 및 신청희망자 선진지 답사 선정된 사업자 워크숍 및 전문 컨설팅, 멘토링 예비 사업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발굴 교¾ 상담창구 개설(사업발굴, 인증절차 등) 충남형 사회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충남형 사회적기업 시청 설명회* 등

ЦΟ

(상담·인증지원) Window

Business Social

S

Center

메뉴얼(사업발굴, 재원확보, 평가 등) 연구 협동조합, 지역통화, 마을만들기 등 기초연구 <u>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전략(법정계획) 용역 연구</u>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 연구(편드 조성 등) 사업발굴 및 신제도 도입(예 지역밀착형 청년인턴제

(연구·정책지원)

Support

**Ш**|0

도미

- 41 -



# 2. 충성남도 사회적기업 생태계 분석

소폭 인구증가, 재정건전성 제고, 백제/내포 문화자원

인증 SE 분포도 전국 최하위, 사회적경제조직간

- 한국 유기농법 발원지(홍성)이자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문당리, 서천, 아산, 금산 등) 보유
  - (예비) 사회적기업 50개소, but 영농법인 최다 분포, 지방대학 협력 가능성 등 잠재풀 충분
- Cf) ′11충남형SE 41개소 신청, 마을기업 22개소 선정예정

사 때 음

지원계획

충남형 SE 개념화, 지역 특성화

필요한 지역 생태계 분석 미흡

중간지원체 통한 자립경영 지원 강조, 단계별 지원전략 가시적 추진 부족

재정지원 이용한 단기 SE창업 유인정책 편중

상설적 연대 및 중간지원활동 미흡 도민의 사회적경제 이해도, 자발적 참여 부

파 서

<u>해</u> 여

사회적 투자자본 및 기존 투입자원

-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 사회적경제邒 신설 충남형SE 육성계획, 기업발전 단계별 지원전략 제시
- 리 (충발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 부처 시책의 깔때기 기능수행 가능한 중간지원체 설 충남도와 정책협력,

⋛

- 지방분권 진행, 사회적기업 지역화, 지역일자리 공시제
- 민선 5기 지자체장, 사람번영 중심,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위한 사회적경제, 권역간 균형발전 비젼 제시
- 2014년까지 충남형SE 200개 설립, 일자리 2000개 창출의 구체적 목표수립, 5년간 지원예산 280억원 배정 구상 혁신적 제공모델에 초기로 SE의 •사회서비스 정책발달 N 도 대한 기대감
- 고령화로 활력 저하 및 재정부담 증가, 양극화 심화 권역 격차심화 ■ 농어촌/낙후지역의 발전기반 취약,
- ШΟ 자원부족 상 인증SE 과 충남형SE 지원체 분리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과 병행



# 3. 사회적기업 관련한 오해와 진실

##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주도적, 정부의존적이다

전나자 정책목표 수행 일자리 창출' 이라는 단일목표 강조, • '새로운

아

'인증 = 지원' 방정식 채택 배경 이해 필요

• 시민섹터 대응 : 자율적 등록제 전환 요구, but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윤리적 소비/투자 운동 시급

## 인건비 지원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

인건비 지원이 2010년 고용부 사회적기업 지원예산 1,414여억원중 75.9%

품질경쟁력, 자본축적 가능 인건비 지원이 정부의존성, 근로자등의 기업가정신 훼손 vs 지원기간 활용한 교육훈련,

KIO 누 • 시민섹터 대응: 포괄적 보조금 형식 지원 기대, 성장기 기업은 시장조성과 자본조성 지원 욕구

## 정부 지원 중단시 대부분 망할 것이다

字 字 • 취업 취약층의 경쟁력 수준 고려시, 일반 기업 폐업율 보다 생존 가능성 낮다는

• 2008년말, 총사업비 2,120억원중 64.3% 영업매출, 27.8% 정부지원임

• '08년말 지원종료 54개소 조사결과, 폐업은 없고 고용규모가 1,319명에서 1,161명('10.6말)로

시민섹터 대응 : 사회적기업의 운영이념, 정부지원에 대한 태도, 지역자원 연계 정도 등 따라 고용조정 편차 컸음

## 저임금 비정규 노동시장 양산한다

4

교 여 • '08년중소기업 평균임금 191만원 대비, SE 평균 100만원 수준. But 동종업종 비교시 기본급 110%로 더 우수 • 시민섹터 대응 : 정부 1년단위 인건비 지원계약으로 비정규 43%로 높음, 남녀차별 등 노동시장 문제 극복 필

## 섹터간 /부처간/중앙-지자체간 파트너쉽 부족하다

 $\mathbf{C}$ 

그K 이미 • 고용부외 행안부, 지경부 등 유사정책 증가/ 지자체 광역 16+ 기초 68개 조례제정, but 거버넌스 만족도

•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40%, 인증SE 22%) 고용의 양/질 우수 vs 대기업 직접설립에는 비판 존재

# -동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사회적일자리 지원 연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3명이내 3년간 150만원/인 -연차 차등제(90-70-50%)

(3년간 총5백만원 한도) -권역별 지원기관 신청자문

3백만원초과시 10%자부담) -예비기업: 연3백만원 이내 이증 기업 자본 대부 -시설설비비, 원자재비 등 -최대 4억원 , 2~5% 이율 -1년거치 4년 분할 상환 -10 미소금융재원 한함

-인증 후 4년간 법인세 50% -연계기업 소득의 5% 감면 -추가적 조세감면 협의중 세제감면 혜택

사업개발비 지원 (′10신설) -지자체 매칭펀드 -지자체 매칭편

이증후 4년간 지원 (근로기준법 준수기업 대상, 피고용인 전원 월74천원/인 사회적일자리+@로 지원) ᄧ 고용주 부담 사회

스무즈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우선 서비스 위탁 권장 cf)'09 지자체 541억원

브랜드 제고 지원 -사회적기업 주간 선포, 온라인 사이트 구축, 우수사회적기업 시상 1에0 낌

정 山 ᅫ 퍼 ᄜ 비 미닌 칫

연구조사

상 (전 전 지방정부 지원 유 -법개정(안) 국회

절 지자체 35곳 조례 기업사회공헌 연계 지원 -세제지원, 프로보노 등

보정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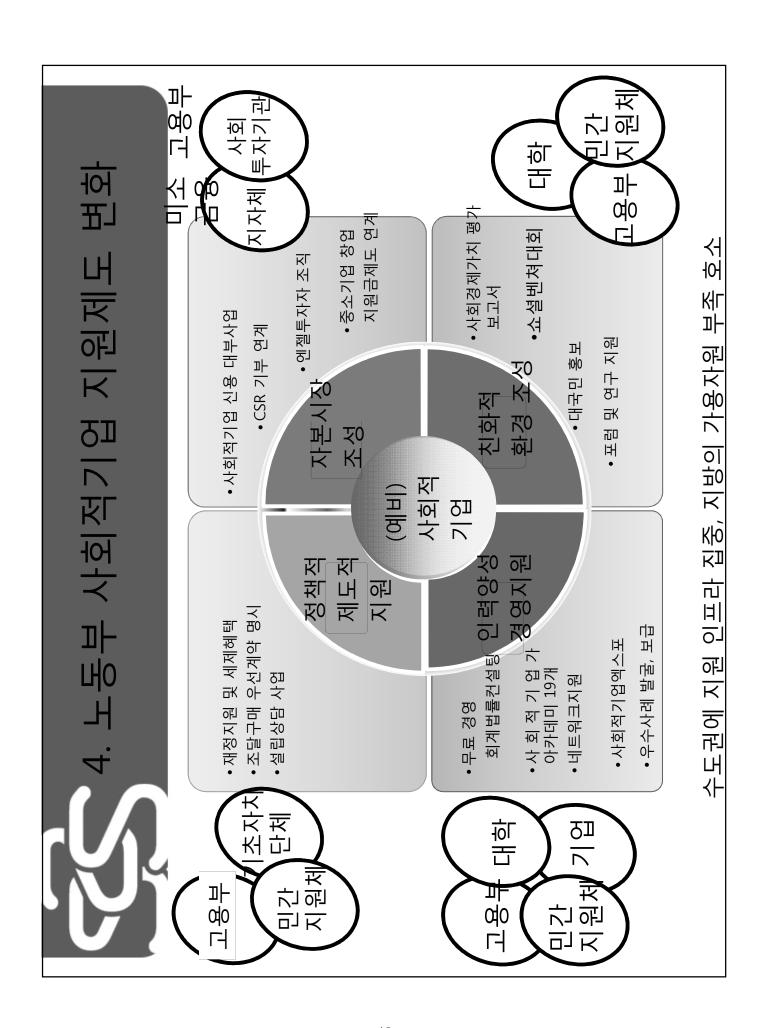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운영 -창업 및 인증 컨설팅 -재정지원 등 연계 지원 -전국 13개소 지정 운영중 

사회적기업가 양성지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기초 9개소, 특화 10개소 **특화 10개소** 쇼셜벤쳐대회

나에는 <u> 수엔적시업 도열본</u>머

4개사 지정

구입비



### 5. 2011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개선방향 벼 며

국민이 참여하여 시민사회가 키우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갖추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ᆘ

마련 : 유형별,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자립지원 맵

КΗ

인건비 중심의

직접지원

방식 개선

야

조성, 민간투자

금융지원 : 모태펀드 50억원 출연

ᄗ

사 오

차등지원: 90%-80%-70%로

인건비

연차별

(하 아벨 자생력 제고를 내실화

간접지원 제도 화충 다양한

전국민

의 다 톤

K⊢

ШΟ 참여 운동화

사회운동을

땨 얜 古人に

건 M 민간운동협의체 바 조직화 : 시민사회 해 기정

쓔

사 장

型型

: 구목반면

경영지원

武

구매지원

ШΟ

라 라

지방세제

사 유 의

중소기업

세제지원

활 성 화 공시제, 자원봉사 확대 : 경영실적 국민참여

었 30 분 위기 なる



###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6. 지<u>요</u> 등

呩 신설하여 ᄣ 纹 十 2항하 响 지 원 양 제5자 시 - 도에 별도의 지역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체계와 관련, 사회적기업육성법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의 내용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 기족 [ | 기존 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법령 (2010. 5)                            |
|------|---------------------------|--|
|      |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           |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            |
|      |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
|      |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 |
|      | 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정           | 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 |
|      | ·<br>- 는                  |  |
|      |                           |  |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           | 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③ 그요ㄴ도ㅂ자과ㅇ 스리             | .ㅇ 스리되 지의계하이 11.요 드이 ㅇ스하 시.ㄷ예 벼ㄷ이 지의으 하 스 이다       |



# 6. 지역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추진 근거

### 지역사회정책의 전환 요구

#### 現 지역개발정책

주체 : 중앙정부/행정 주도

구조 : 소득 재분배

방식 : 부동산 개발/ 산업

단지 유치 방식 모방

경제성, 기능성 중

심의 지역개발

시장만능주의의 폐해 정부 부담 완화 필요 비화폐적 수요의 증대

#### 新지역사회 개발정책

億륜

전 전 한 인

- •주민 주도 및 민관 거버넌스
- •개성있는 총체적 지역 디자인
- 서비스보장으로의 전환
- 사회적 자본 축적 및 활용

일자리 + 스전

###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 거시경제와 사회재건의 도모
- 지속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인용: 김재현, 2009, 커뮤니티 비즈니스 & 지역만들기 머 커뮤니티비즈니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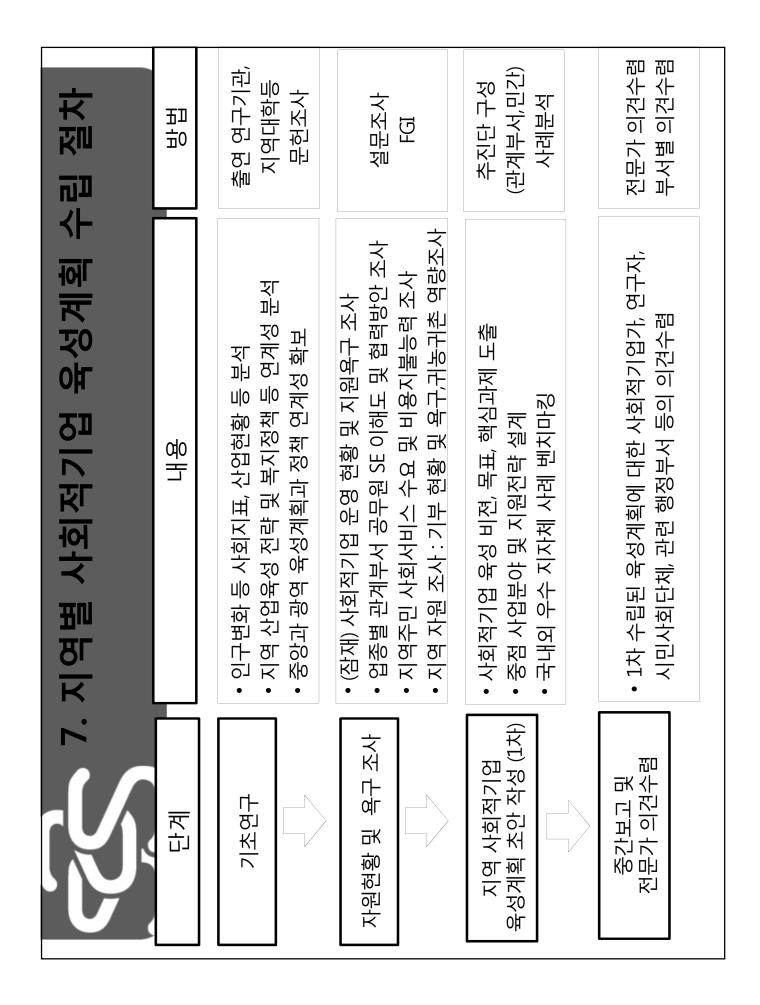
# 6. 지역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추진 근거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역할

- 사회적 기업은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대행하면서 보다 수준 높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 사회적기업은 창업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국가 생산성을 증대시킴
- 그리고 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있음. 소외계층이 기술을 익히고 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함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재생과 사회통합,
- 사회적기업은 공정거래와 같은 윤리적 실천을 주도하고, 윤리적 시장(ethical markets)을 촉진하여 기업 (Office of the Third Sector(2006),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Scaling New Heights) 들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실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증가시킴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전달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 시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
- 짱 사회적기업은 장기실업자, 장애인, 소수집단에게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을 시켜, 이들이 임시적 또는 ' 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함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시민참여를 촉진시키는 등 사회 (Paola Bobos 외(2006), Reviewing OECD experience in social sector) 위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시민사회 발전에 공헌함 화신을 1



| 획 수립 절차                 | 品  | 추진단회의   | 공청회 개최                                    | 수립 추진단회의                    |                      | 교육 및 워크숍                   |
|-------------------------|----|---|---|-----------------------------|----------------------|----------------------------|
| 7. 지역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절차 | 내용 | •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하여 2차 계획 수립<br>•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 지역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공청회<br>•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수렴 통하여 최종 계획 | •부서간 협력 최종 확정된 계획 공고 | • 민-관 워크숍 및 관계 부서 공무원 교육 등 |
|                         | 단계 | 지역 사회적기업<br>육성계획수립 (2차)                                 | 전<br>작<br>아                               | 지역사회적기업<br>육성계획 확정(3차)      | 다운                   | 워크숍 및 교육                   |

# 8. 지자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사례 :강원

사회적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008.8)

•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 2012년까지 40개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

육성전략( 육성 3+지원3 ) 수립

육성 3 –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중대기업 및 NGO 분야에서 SE 육성

- 농산어촌 관광분야 육성

지원 3 – 인증 사회적기업 경영자립 지원

-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도시자 순회간담회, 우수사회적기업 표창 등 통한 사회분위기 확산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2008.9~12)

• 전문가 포럼

• 도, 시군,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 워크숍

• 관계공무원 및 민간단체 합동 워크숍 추진

조례제정 (2008.12)

사회적기업 육성협의회 명시 (관계공무원 및 현장전문가 참여 상시기구)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산하기관 및 시군구 포상

지원사업 개시(2009~

통하여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추진 • 2009년 지원예산 편성을

# 8. 지자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사례 :강원

세부 육성전략 수립

ᇊ • 2010. 8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 지역사회연계형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10 강원발전연구원 'CB와 SE의 통합적 지원체계연구' 등 추진

• 기본전략 - 1마을 1사회적 기업 육성

- 1시군 1중간조직 설립

- 1읍면동 1시범사업 실시

- 1사 1사회적 기업 자매결연 추진

CB와 SE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유사정책 및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정책 통합성 확보 필요

- 도차원 사회적기업·CB 통합지원센터 설치(민간위탁), 시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및 전담부서 설치 필요 제기 시군 중간지원기관의 주요역할 : 협력체계 구축, 인력양성, 조사연구, 컨설팅, 네트워크 형성 기능 담당

및 공공기관의 공공시설 관리와 운영 (도로, 수도, 공원, 관광시설 (가칭) 강원도 공공시설 지정관리제" 도입 제정 필요성 제기 포함)을 주민주식회사, 공동체 법인 등에 위탁운영 지자체

Ц|0

#### ェ ·사회적기업권역지원센터 •전문경영컨설팅 업체 중대기업, 상공회의소, 다 학 및 강발연, 연구기관 등 자원연계발굴 지원기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8. 지자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사례 :강원 사회적기업 추진도 양 육성지원시책 수립 지자체 추진 총괄 조례제정 등 제도구축 분야별 협력관계 유지 (기획, 사회복지, 농산 어촌 담당부서 등) 찞 시군단위 세부계획모델발굴 및 실행사회적일자리 협력지자체 예산집행시군단위 관련부서협력 고용지원센터 (5개) ψ : 및 시군과 협력 1델발굴 및 실행 -동부 예산 집행 군 (18개) 竝 강원도 사회적기업 $\overline{\prec}$ 대머귀 강원도의 기업발굴 대상 심사시책전반에 대한 심의예산집행 심의 시책전반 협의사회적기업 발굴 협의모델개발 및 기관협의실무발굴단 운영지원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혐의회 (회장: 산업경제국장) 하하 하고 하고 강원도 고용심의회 (위원장: 도지사) 예비 사회적기업 실무 발굴단 (5개 고용센터) 예비사회적기업 발기관간 협력관계 3사회적기업 지원 4 ਲ



# 8. 영국 커뮤니티 뉴딜정책(NDC) 사례

• 목표 :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간 빈부격차 줄이고 사회통합

영국내 빈곤지역 상위 10% 해당) 연혁 : 1999년 8월 개시, 영국내 39개지역에서 추진 (29개 지역이

빈곤 악순환으로 지자체 불신팽배 배경 ; 경제낙후로 기회박탈,사회기반시설 취약하고 서비스 부족,

• 성과 : 지역당 1,080억원 투입

송 250만명 고용창출,빈민층 연수입이 750만원 증가,여성취업 증가, 빈곤지역 학교 투자

리트홀트 '브래드-포드 선라이트 지역커뮤니티 위원회 중심의 NDC (New Deals for Community) 추진

범죄율 편균2배, 범죄 두려움 4배,실업률 12.5%, 중등교육 수료율 24.1%, 빈곤 쓰레기 기물파손 등 심각

중등학교 수료율 100%, 실업률 8.25%, 범죄발생 50%로 감소, 주민건강 및 기반시설 확충도 20% 이상 증가

#### 사업내용

심장을 위한 건축자재 공급등), 범죄(CCTV 설치, 주민방범단, 마약교육등), 일자리, 교육( 초등고학년 지역투어 및 비즈니스 체험사업, 방과후학교 추가투자 및 학습멘토 파견), 거주 적합성 제고 • '주민과 참된 파트너쉽 없으면 실패한다'는 인식으로 주민 기업체 학교 공공기관 ngo 지방의회 참여 위원회 구성 분야: 주택과 물리적 환경개선 (임대주택 건립 및 주택신용기금 운영), 건강(만성질환자 환기시설 제공등 건강한

• 산하 실무소위에서 프로젝트 추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포럼 운영(마을포럼, 청소년포럼, 비지니스포럼등)

#### 言

끿 • 10년 장기추진 전략 수립: 빈곤지역에진정한 변화 이끌어내려면 장기적 안목과 투자필요

중앙정부는 NDC 선정지역 재개발에 필요한 재원확보하여 지원

**Κ**|-지방정부는 NDC 프로젝트에 전문서비스 제공할 공공, 기업계, 시민사회계 파트너쉽 구성의

Seed:s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참여 이끌어 낸 것이 성공의 핵심열쇠로 평가 띠 다양한 포럼

# 9.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시 보완 과제

# 민선 5기 도정 비전 및 역점과제를 고려, 추진방안 마련

- 여 때 '균형있고 내실있는 충남 경제발전' 과제수행 전략으로 '사회적경제 기반구축'을 채택하고 충남형 사회적 장기적 관점과 단계별 이행전략 수립 필요, 도정 비전에 조응하는 충남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화 필 도정 전략과제와 연계한 사회적기업 기획창업 등 모색 : 로컬푸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제공 사업 기업 지정 및 지원정책 추진중임 : 10년후 비젼인 '강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주도형 지역경제' 실현 위한
  - Ц|0

## 도민의 참여와 창의 이끌 육성 전략 개발

- 충남도의 재정투입과 성과목표에 근거해 추진되는 현행 육성 전략에 대한 보완 필요
- 도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상시 제안창구 마련 및 집단지성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보완
- 취약층 고용형은 인건비 지원, 지역공헌형은 포괄적 보조금 형식의 시범사업비로 전환 등 재설계

멍

## 사회적기업 단계별 지원 전략의 내실화

- 초기 1~2년, 사회적경제 조직 및 활동/자원현황 조사연구, 도민 리더발굴 등 기반조성 사업 집중 추진
- 인식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주체별 교육 실시 : 공무원, (예비) 사회적기업가, 잠재 기부자, 도민 - 사회적기업

Ц|0

-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공·실패 사례 발굴과 요인분석, 성공사례 확산 위한 네트워크 지원
  - 충남도내 지역자원 및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이 가능한 주체 발굴, 현실적 예산 확보 및 집행
- 띠 古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전략 분야 발굴 및 전략업종의 특성과 해당 조직 유형에 적합한 지원 방안
- 충청도 정책 추진단계별 과업 수행 내실있는 추진 • 사회적경제조직 성장단계별,
- 머 평가방식 중심의 평가 방식을 넘어 사회적 가치/ 장기적 안목의 중심, 재무성과 중심, 단기성과
- 면 인 애 위한 '사회적경제 가점제 선구매제 활성화

# 9.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과제

## 사회적 경제 조식에 대한 공공사업 우선위탁 방안

#### 1) 경기도 A시 사례

- 청소차량 유류비, 차량정비비,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 비 중복 계상 등의 방법으로 민간 대행업체에게 비용을 환경미화원 수 늘리기, 환경미화원 임금 삭감, 기타 경 과다 지급한 사례
- •연간유류비 계산의 경우 시간당 유류비  $\times$  1일평균운행시간  $\times$  운행일수  $\times$  장비대수로 함. 11개 업체 실제 구유량과 계상 유류비를 비교할 경우 과다 계상액이 연 간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 원가계산시에 지자체별로 시간 당 유류소모량을 다르게 적용

#### 2) 강원도 W시 사례

- 운영 관련하여 28억 2천4백만원을 연간 지원받으며, • W시의 경우 지역도급제 방식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품 매각대금은 W시에 납부함
- W시 선별장 운영 관련 원가분석 보고서에는 20명의 선별인력을 사용하며, 선별인력 1인당 2천4백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함
- W시 감사결과에서 실제 선별장 선별인력은 5~6명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 오사카부, 일본 최초 종합평가입찰제도 도입 (2003.5.5)

- 333
- 평가기준: 가격 50점+ 기술 14점+ 사회복지 30점(장애인 18%이상 고용, 노숙자 고용시 감점 등) + 환경 6점 제도 시행후 장애인 고용율 2.35% ▶ 7.76%로 상승 (공공시장 3천억엔으로 취약층 10만명 고용달성 가능) 근거- 지방자치법 234조 3항, 통상적 최저가 경쟁입찰하나 시행령 167조 목적, 성질이 부적합시 예외인정하여 '지자 체가 가장 유리한 것을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하여 추진
  - 효과- 지역고용 창출 및 지속가능성 제고, 수익 재투자 통한 취약층 근로조건 개선, 복지비용 절감, 환경성 제고 ( 자 원 순환성 제고) 4

#### 젌 <u>는</u> 외 무지원 그러나 매출 전액이 소비자의 지불에 근거한 것은 아님 45 59 42 40 39 67 비중이높음 (약 50%~60%) CIC의 총매출중 사업소득 비중은 약 80%~86%, 정부 보조금 및 기부금 비중은 11%~17%에 불과함 | | |• 즉, 영국 사회적 기업은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방식 보다는 사업위탁 등의 형태로 통해 사업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지원 <del>01</del> 『A Survey of Social Enterprises Across the UK』 인용 ΚЮ 사업대출 CIC 수입구성 9.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과제 총매출 93 94 92 82 82 78 01 IH H H 정부) 지불 제3자 지 왕 인용: IFF Research(2005) 61 47 57 25 44 31 제3자 (특히 먠 0| 52 52 40 48 58 61 平 凶 긳 먠 용지불바 마 27 29 27 45 19 1백만주과 21 刖 86 -마 田 보조금/기부금 ■ 사업소득 □기타 댸 21 15 21 10 31 23 100~1型哭 平 凶 8 17 사회,개인서비스 료사회서비스 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 되 사 매 99K미만 口臣 刖 12 84 仆 $\mathbb{I}$ 01 1日 80% %02 %09 20% 40% 30% 20% 10% %06 %

# 9.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과제

현금기부방식 (결식아동급식비지원, 지역문화예술체험 공공기관이나 기업, 시민단체 등에서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납품을 사회적 기업에 ΚЮ H 디머디 기존 사회공헌 证验 아웃소싱하는

| _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지원 모색 | 지원내용 | 직원유니폼 제조, 명절 선물, 은행권 사용물품 등을<br>사회적기업 예시-참신나는옷, 위캔, 바리의 꿈 장애(<br>사무용품 | <ul> <li>기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재설계하여 사회적기업 연계</li> <li>기업 직원교육 및 가족 지원시 연계</li> <li>사회적기업 예시-노리단, 우리가만드는미래, 신나는문화학교 등</li> </ul> |
|-------------------------------|------|---|--|
| 을 사회적기업을 통해 추진하는              | 분야예시 | 기업사용물품  | 메세나활동 연계<br>등 복지대상 지원시<br>활용   |

 직원복지카드 등을 활용한 임직원 이용 가능 서비스
 사회적기업예시-헬스키퍼사업단 맛사지, 산후도우미 사회적기업카탈로그 제작 기업별 맞춤 구매 컨설팅 유통 연계 등

> ii示 7改

> 중간지원조직

정

수 상 비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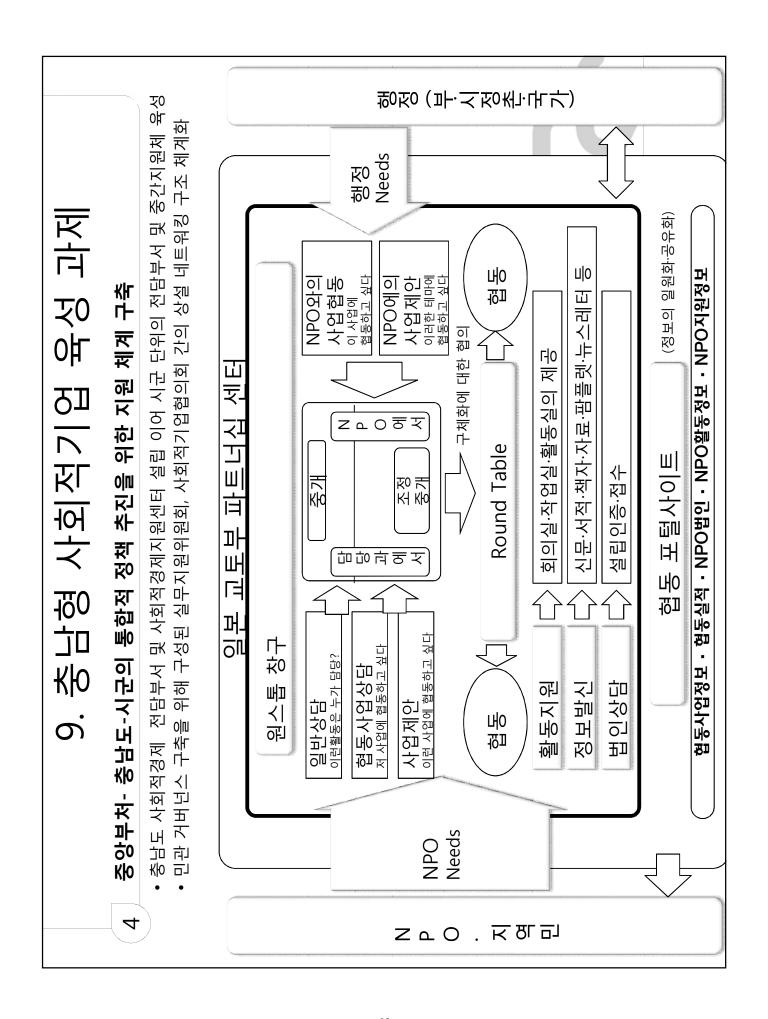
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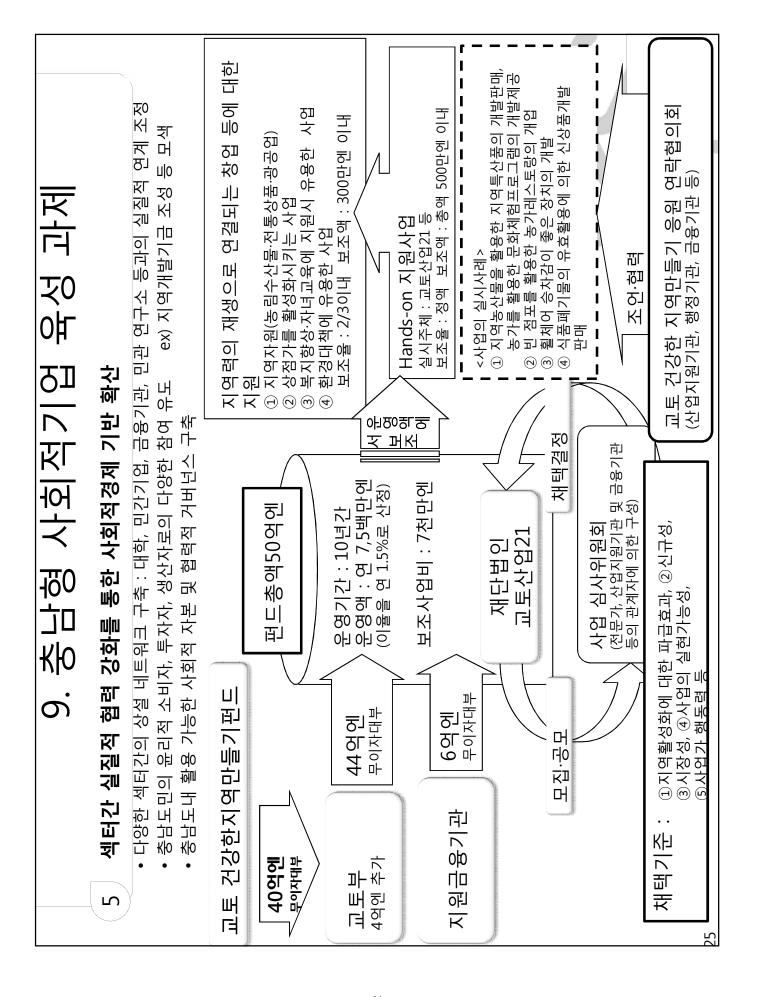
 $\overline{\mathsf{KL}}$ 

ЦΟ

引

사 상품





#### 9. 你记

# 9.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과제



## 🖊 시민적 지지기반 형성

- (記 記 • 사회적기업의 정부-시민-기업-연구기관 등 연계를 위한 다양한 중간지원체 ;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씨즈, 희망제작소, 한겨레경제연구소 등
- 개별 사회적기업 지원을 넘어 사회적기업을 위한 생태계 환경 조성 시원 (윤리적 소비 캠페인, 사회적기업 소비자층 및 생산력 조사/연계 등 )
- 청소년/청년 등 기존 사회적기업 참여대상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



# 9.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과제

## 유휴공간을 사회적경제 복합공간화!

-도쿄 세타가야구 이케지리중학교 유휴공간 활용 사회적기업 '이케지리디자인학]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생활공간, 사업공간 창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이케지리 디자인 학교>설립

o 디자인, 건축, 영상, 음식, 아트, 패션 등 창조사업 분야의 41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음. 일반 회사 외에 창업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 '쥬니어 비지니스 인큐베이팅 센터' 운영. 이 외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아트 워크숍, 비지니스 서포터 센터, 갤러리, 지역복지 사업, 해외문화교류 사업 등을 기획/운영



| - 64 | - |
|------|---|
|------|---|

참고자료

# 한국의'사회적경제'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신명호(한국도시연구소장)

#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1)

신 명 호(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1. 문제 제기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1997년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빈 곤과 실업을 새로운 사회문제로 맞이하게 되었고, 일자리를 잃은 가난한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제3섹터가—혹은 민과 관의 협력적 관계 위에서—고실업과복지의 축소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개해온 일련의 실험들은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경제성장의 시기와 경로, 복지국가의 건설경험, 그에 따른 사회복지의 확장 정도에서 유럽 국가들과 한국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소득의 양극화와 실업 문제, 저성장에 따른 복지재정의 제한이라는 공통점은 우리가 유럽 사회의 경험에 주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나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로 하여금 생산하게 하되, 상업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 보하는 경제 모형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났다. 이에 관한 논의 는 주로 '제3섹터',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등 조금씩 다른 용어와 개념 이 혼재된 채로 이루어졌고, 처음에는 주로 학자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 론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그러던 것이, 정부 주도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자활지원사업,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사업 등—이 만들어지면서 각 제도들이 배출한 조직들은 자신의 중·장기적 활로와 전망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이 때마다 사회적기업은 그러한 조직들이 나아가야 할 지향 내지 목표로서 거론되었다. 또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목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러한 제3섹터 경제의 활성화에 관심

<sup>1) &</sup>lt;동향과 전망>, 2009년 봄호(통권제75호)에 게재되었던 원고입니다. 필자의 허락을 받고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을 가지고 공동보조를 위한 협력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는 가운데, 2007년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은 이러한 분위기를 급격히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금 융자와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공동체들이 늘어났다. 불과 5~6년 전만해도 생경하게 들리던 '사회적기업'이란 용어가 이제는 상식처럼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용어(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업)는 여전히 사용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한 혼란과 오해를 낳는가하면, 혹자의 경우에는 외국의 이론적 성과물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 머지 우리나라의 역사와 상황을 고려한 개념의 재해석을 거부하기도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한 노동부는 법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 적기업 이외에는 '사회적기업'이란 명칭 자체를 쓸 수 없다고 못을 박는가 하면, 비정부기구(NGO)들은 정부가 그 용어의 독점사용권을 갖는 것은 부 당하다며 더욱 탄력적인 개념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한국 여성노동자회, 의료생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으로 운영해오던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라는 네트워크는 2008년 6월, 참가단체를 확대하면서 조직의 명칭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의'로 변경했다. 자신들의 지향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가운데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길고 오랜 토론 끝에,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 고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처럼 이들 용어는 학문적 논의의 장을 넘어 실천 운동의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가치와 관련된 의미의 확장을 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개념들이 명확히 구분되고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혼용 되고 있어서 의미의 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의미를 우리나라의 역사와 사회(복지)운동적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고 개념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당면한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적 모델로서, 우리나라일각의 사회(복지)운동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것은 올바른 개념에근거한 사회적경제의 담론을 확산시키는 일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 기초해있다. 제2장에서는 우

리나라의 용례에 직접 영향을 준 유럽의 사회적경제 개념이 어떻게 생성·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피고, 제3장에서는 흔히 혼용되고 있는 제3섹터, 사회 적기업 등의 개념과의 차이, 그리고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관련 개념들이 갖는 내용적 의미의 차이를 밝히며, 제4장에서는 이상의 개념적 구성요소들 가운데 한국 사회에 적용할 기준들을 가리고 그에 따라서 한국 사회적경제 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개념의 탄생과 발전 과정

우리말의 '사회적경제'는 영어의 social economy, 불어의 économie sociale의 번역어이다. 그리고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00년을 전후해서 활동했던 프랑스의 경제사상가 '샤를 지드'(Charles Gide, 1848-1932)였다. 개혁적인 성향의 지드는, 당시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시장경제가 유발하게 되는 갖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사회적경제를,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으로—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더욱 사회적(social)이고 공평한(equitable) 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을 목표하는 대안적 체제로 상정했던 것 같다(Münkner & Kang, 2006: 204). 기독교사회주의자로서 협동조합운동에 심취했던 그의 의도는 확실히 사회 변혁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주창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그가 사회적경제의 목적을 노동조건의 개선, 주류 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온갖 위기에 대한 안전보장, 경제적 자립의 보장등(Vienney, 1994; Mijnkner & Kang, 2006에서 재인용)으로 설정했던 점을미루어보면,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꿈꾸는 사회주의자이기보다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실용적 개량주의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사회적경제의 사상적 뿌리를 사회주의적 전통으로까지 확장하는 데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사회·경제적 목적을 지닌 협동조합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로 대체해야한다'고 주장했던 루이 블랑(Louis Blanc)은 말할 것도 없고, 생시몽(Saint Simon)이나 푸리에(Fourier)같은 사회주의자 역시, 사회적경제의 탄생 배경에 한 몫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는 시장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투쟁과 노력들이

협동조합 결실을 맺어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직, 예컨대 (cooperative) 등의 조직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01년에는 그 전까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으며 철저히 불온시 되어오던 민간결사체 (association)들이 법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제 협동조합, 상 호공제조합(mutual insurance), 민간단체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번성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 정치·사회적 개혁을 지향했던 이들 조직은 법 적 타협을 이룩한 다음부터 체제 내에서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협동조합 부문과 자본가들의 시장경제는 1920~40년대 사이에는 각기 분업을 해오다 가, 이후에는 같은 활동 영역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서, 협동조합 역시 시장 경제의 일부로 편입되게 된다. 상호공제조합은 주로 의료보험 기능을 수행 하다가 국가 주도의 의료보장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보조하는 영역으로 흡수되었다. 더군다나, 민간단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 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서비스를 공 급하는 주체로 깊이 관여하게 된다.

프랑스 국내에서 각각의 발전 경로를 걸어오던 이들 조직은 마침내 1970 년, 사회적 힘을 키우고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연대를 모색하면서 '상호공제조합, 협동조합, 민간단체 전국연락위원회(CNLAMCA)'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공통된 정체성을 표현할 개념어를 물색하던 끝에, 사회학자 앙리 데로쉬(Henry Desroches)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회적경제한장'을 채택하게 된다(엄형식, 2008: 50). 샤를 지드 이후 잊혀져 있던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개념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또한 1989년에 유럽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의 개념 정의를 채택했는데, 그에 따르면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Roelants, 2002; 엄형식, 2008: 52에서 재인용). 그러나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적극성의 정도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2).

<sup>2)</sup> CIRIEC가 진행한 연구보고서(2007)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에 따르면 유럽국 가들 가운데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은 '사회적경제' 개념이 각 영역에서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데 반해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비교적 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형식, 2008: 53).

한편, 우리가 프랑스의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9세기 말 처음 등장한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애초 시장경제에 반대하고 그 폐해를 억제하기위해 시장경제와 대립되는 어떤 것으로 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국가 차원의 제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경제체제의 종속물로전략한 측면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사회적경제의 대표 모델로 거론돼온 협동조합<sup>3)</sup>은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면서도 경쟁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탓에,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장경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전문화를 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협동조합은 일찍이시장경제의 한 구성요소가 되었고, 이들의 생존 욕구는 더 이상 전투적이고정치적인 비전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요컨대, 이익(interest)이라는 협소한 패러다임을 택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이론에서 '조직된 행동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e dimension of organized action)이라는 핵심이 빠져버린것이다(Evers & Laville, 2004: 93). 결국 조직의 구성원과 경제적 성과 간의관계만이 강조되고, 그 조직의 범주를 넘어서 어떤 집합적 행동이 갖는 공적 역할은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적어도 1960년대까지 발전되어 온 '사회적경제'의 개념 하에서는, 폴라니 (Polanyi)가 제시했던 세 가지의 경제원칙 가운데, 호혜성(reciprocity)이나 재분배(redistribution)<sup>4)</sup>의 원리는 시장이라는 중심 유형에 비해 주변적인 것 내지 보조적인 것으로 폄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20세기 후반부터 민간단체들이 이러한 전통적 '사회적경제'를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대의 경제(économie solidaire)는 사회운동으로부터 멀어진 '사회적경제'에 대한 반성이자, 관료적이고 중앙집권화된 국가 주도의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관해 샤니알과 라빌(2008: 147)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3섹터를 프랑스식으로 이해하자면 '사회적경제'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년 간 나타난 프랑스 경험의 두드러진 특징은, 상이한 조직들을 하나의 명칭 아래 모으는 것을 넘어서서 (……) 연대에 기반한 시민 경제(civil and solidarity-based economy)의 관점이 살아났다는 것이

<sup>3)</sup> 포케(Fauquet)와 비에니(Vienney)는 '사회적경제'의 범주를 협소하게 정의해서 민간단체들 가운 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자연히 협동조합 모델이 '사회 적경제'의 표준처럼 자리잡게 되었다(Evers & Laville, 2004: 92).

<sup>4)</sup> 자본제적 시장을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제도처럼 여기는 주류 경제학적 관점을 크나큰 오류라고 지적했던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경제통합의 유형을 크게 호혜성, 재분배, 교환으로 나누고 각각의 사회조직 원리를 대칭성, 중심성, 시장형태로 분류한 바 있다.

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서는 '사회적경제'가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시장사회라는 지 배적 개념으로부터 다원적 경제의 개념으로 옮겨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원적 경제란 시장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경제적 원리들과 결합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 3. 제3섹터, 비영리부문, 그리고 사회적기업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로 확장해 보더라도, 제3섹터의 역사는 국가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구체적 상황과 정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제3섹터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장과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행정부처 및 공공정책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증대해왔다. 그리하여 유럽 사회의 맥락에서는 복지서비스라는 광범한 영역 안에서 여러 섹터들이 보호된 시장을 서로 공유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는 전통이 있어왔기때문에, 자연히 제3섹터는 중간적(intermediary)이고 다원적(pluralistic)인 특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유럽의 제3섹터 개념은 미국의 그것에 비해서 '복지혼합'(welfare mix) 내지 '복지의 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일부분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Evers & Laville, 2004: 14).

이에 반해서, 미국의 전통은 시장과 국가라는 사회의 양대 기둥 사이에서 시장과 국가의 실패로 인해서 제3섹터가 존재하게 된다고 본다. 역사적 관점이 약한 미국의 학풍은 경제학 이론에 의지해서, 정보의 불균형을 극복하지 못한 시장의 실패와 소수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실패로 말미암아 제3섹터가 그 둘과는 별개의 실체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제3섹터는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비영리(non-profit) 부문'과 등치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비영리부문은 공식적이며 정부와는 독립적 관계로 자치적이고, 이윤을 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된다(Salamon & Anheier, 1997). 이가운데서도 특히, 이윤 배분의 제한—'자본의 분담금이나 소득의 형태로 조직의 이윤을 받는 소유자가 없고, 이윤을 낼 수는 있지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기준으로 강조된다(안하이어 & 사이벨, 2002: 42; 김승현, 2008: 32). 앞서 프랑스의 예에서 보았듯이, 특정

개인의 이윤 추구는 금기시하되, 협동조합 방식의 집합적 이익 추구는 당연 시하는 유럽의 제3섹터 개념과 견주어보면, 조직의 이윤 배분 자체를 인정 하지 않는 미국의 비영리부문은 개념상 확실한 차이를 드러낸다. 예컨대, 유럽 제3섹터의 대표 유형인 협동조합이 미국식 개념으로 정의하면 그 범 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영리부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미국 이외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잘 통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제3섹터를 대체로 시민사회 부 문과 등치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국가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견지해야 할 독립성을 유독 강조하는5) 미국의 지적 전통에 대해서도 유럽의 이론가 들은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유럽의 제3섹터 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가 부문과 밀접히 협력하고 때로는 통합되는 경험을 해왔고, 따라서 제3섹터를 국가 부문과 대립되는 시민사회 섹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긋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럽 의 논자들은 '제3섹터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적 영역(public sphere)의 일부'라는 가설을 발전시켜왔다(Evers, 1995).

그렇다고 해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제3섹터를 불어권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경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유럽연합(EU)은 사회적경제를 범유럽 차원의 운동적 의제로 채택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가 하면, 90년대에 들어서는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들을 적극 지원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회적경제가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해돼왔으나, 점차 지원과 규제를 위한 법적 틀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에서 용어와 개념의 범위를 놓고 약간의 이견들이 생겨났다. 이것은 각 나라 근대사의 전개과정이 다르고 그로 인해 정치·경제적 상황이 상이한 데서는 오는 차이였다. 예를 들어, 독일은 오늘날 협동조합의 전통이 단절된 나라에 속한다. 20세기 초기에는 협동조합들(소비자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이 급격히 팽창했으나 파시스트 체제를 겪으면서 거의 파괴되었다. 이후 사민주의자들에 의해 일부가 재조직되었지만 이미 사회적·도덕적 자원을 상실한 상태에서, 생존에 성공한 협동조합일지라도 (특히 주택부문의 협동조합들은) 거대하고 관료화된 조직으로 변했고, 부패와 스캔들을 남기고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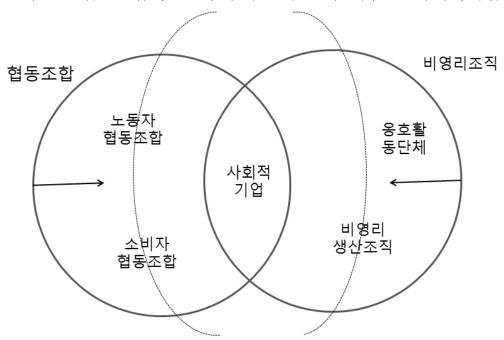
<sup>5)</sup> 미국 비영리부문의 주요 특징으로 독립성을 강조하는 배경에 관해서는 브라이언 오코넬 (2008) 을 참조할 것.

뿐이다(Weiner, 1994 ; 보데 & 에베르스, 2008에서 재인용). 이처럼 오늘날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조합의 기능이 상실된 국가들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형태를 협동조합 등으로 규정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다. 뮝크너 (Münkner) 등은 첫째, 협동조합이란 전통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하는 상호부조 내지 자조(self-help)조직인데 반해, 오늘날 사회적경제에서 말하는 '연대'란 내부 구성원만이 아닌 비회원들의 이익까 지를 고려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둘째, 협동조합은 정치적 · 경제적 독립성 을 특징으로 하는데 사회적경제는 공공부문의 지원과 재정적 후원을 받음 으로써 국가로부터의 통제를 인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셋째, 현대적 용법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협동조합보다는 오히려 비영리조직이나 제3섹터 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프랑스식 개념 정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래 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 대신, 경제활 동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각국의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독일의 경우, 조세법 제14조에 정의된 경제사업체 (wirtschaftlicher Geschäftsbetrieb)는 '시장에서의 상업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즉, 독일에서는 경제사업체의 목적이 그 조직의 내부 정관에 의 해 결정될 뿐, 영리를 추구하는지의 여부는 전혀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 것 이다(Münkner & Kang, 2006: 213-8).

이처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제3섹터를, 협동조합 등을 지칭하는 '사회적경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데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3섹터를 '비영리부문'으로 해석하는 미국적 전통에 대해서는 대립적 위치에 선다는 점에서 공통된 입장을 갖는다. 결국 제3섹터의 개념에 관한 유럽과 미국의 전통은 각기 대립적인 요소들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이 그러하듯이) 자신들이 생산한 일체의 산출물을 시장에 내다파는 기업 형태의 조직이 있는가 하면, 그 대립점에는 경제활동의 성격이 매우약한 민간단체—심지어 (기부금이나 정부보조금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자원봉사활동 조직처럼) 비시장적, 비화폐적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있다. 또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회원제 민간단체처럼) 상호이익(mutual interest) 집단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는 (빈곤 문제에 대항하는 조직, 환경운동 단체처럼) 보다 넓은 공동체의 이익을 구현하려는 보편적 이익(general interest) 조직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드푸

르니(Defourny)는 '사회적기업'이란 개념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양자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그림 1> 협동조합 및 비영리 부문의 교차 지점인 '사회적기업'



출처: Defourny (2001). Borzaga & Defourny.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위 그림에서, 가운데 원점에 가까이 위치한 조직일수록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을수록 특정한 집단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전통적인 협동조합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지향하는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이해집단이 단일한 협동조합에 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을 포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전통적 의미의 민간단체(association)에 비해서 생산활동과 관련해서 경제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도전 정신을 강조하고 높이 평가한다. 비영리부문에 속한 조직들 중에서도 생산에 관여하는 민간조직은 단순히 옹호활동을 하는 기구나 후원금을 모금하는 재단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에 훨씬 가까운 성격을 띠는 것이다(Defourny & Nyssens, 2006: 8-9).

미국과 유럽이 각각 '사회적경제'와 '비영리부문'이란 개념을 경원시 해왔던 데 비해서, '사회적기업'은 1990년대부터 양쪽 진영이 공히 채택하고 즐겨 사용해온 용어이다. 다만, 그것이 지칭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어서, 미국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하는 영리기업'(예컨대, 사회

공헌기업)에서부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데 반해서, 보통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공익성을 띤 사회적 목적과 운영의 자율성, 사람 중심의의사결정구조, 이윤 배분의 제한 등 규범적 내용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경향이 있다6.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이란 개념이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혼동되어 이해되는 데 반해서, 유럽에서는 흔히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전달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주도의 사업을 가리킨다(엄형식, 2008: 105).

10여년 전부터 한국에서 '사회적기업' 내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확산 일로에 있는 실업과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던 까닭에, 사회적기업을 사회공 헌기업 정도로 이해하는 미국의 탈규범적 전통보다는 시장자본주의에 대응 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온 유럽의 역사적 경험이 더 가깝게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내용 역시, 다양성 을 전제로 한 유럽의 제도적 상황과 차이가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구상과 도 다소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주로 유럽의 이론과 실험을 참고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의도하는 한국적 개념 정립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단지 합리적인 분류법을 찾는 데 있지 않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다른 사회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접목되어 활 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므로, 역사적이고 정치경제적 관점에 서 있는 유럽의 논의를 중심에 두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사회적경 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유럽의 담론을 출발점으로 하되, 우리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보편적 상식에 입각해서 재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쳐 야 하다.

그렇다면 유럽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사이에는 어떤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가? 우리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사회적기업'은 경제활동을 하는 개별 주체를 가리키고, '사회적경제'는 여러 경제주체들을 포괄하는 부문

<sup>6)</sup> 유럽의 제3섹터 연구네트워크인 EMES는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의를 다음 9가지 기준으로 내리고 있다. 경제 및 경영의 차원에서는 ①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할 것, ②자율성(autonomy)이 높을 것, ③재정자립을 위해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할 것, ④최소한의 유급노동이 있을 것, 사회적 차원에서 ⑤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이 명확할 것, ⑥욕구나 목적이 같은 그룹 혹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초동 주체가 될 것, ⑦의사결정이 자본의 소유 정도에 좌우되지 않을 것, ⑧사업에 관여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⑨이윤배분에 제한이 있어서 이윤을 극대화하지 못하도록할 것 등이다(Nyssens, 2006: 5-6).

내지 경제단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들리지만, 서구의 이론에서 social enterprise는 각 나라마다 법적 형태와 명칭이 다른 경제주체들을 총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영국의 커뮤니티기업(community businesses)과 노동자협동조합(worker co-operatives), 이탈리아의 사회협동조합(co-operative sociali), 프랑스의 노동통합기업(entreprises d'insertion), 스페인의 특별고용센터(centros especiales de empleo) 등을 모두 'social enterprise'로 통칭하는 것이다. 어떤 사업체를 정부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와는 용례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사회적기업'이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경제'와 다른 점은 <그림 1>에서 드푸르니가 설명하고 있듯이,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제조직 일수록, 통상의 협동조합처럼 구성원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보다는 보다 넓 은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또한 시장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 한 상업활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두 개념의 출현 시기에 시차가 있으므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유럽의 '사회적경제'가 협동조합, 상호공제 조합, 민간단체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상기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은 복지 국가의 경제·사회적 조건이 변화된 속에서 종래 조직들의 한계를 넘기 위 해 혁신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등장한 진일보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두 용어 는 오늘날 공존하고 있으며, 두 개념의 상관관계는 다소 모호한 채로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그림 1>에서 보듯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을 포괄 하는 보다 넓은 개념처럼 이해되기도 하지만, 논자에 따라서 재화와 서비스 를 생산하는 조직만을 사회적경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모든 비영리조직들 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관해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장원봉, 2006: 33) 양자 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과 혼란이 한국 사회 에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 다.

# 4. 한국의 '사회적경제', 그 내포와 외연

## 1) 개념의 구성요소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룰 차례이다.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은 자

첫 연구자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흘러버릴 수도 있는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연구자에 의해 내려진 개념 정의가 충분한 근거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경우, 아무도 그러한 용법에 주목하지 않고 그 개념을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사회적경제가 되지 않으려면, '사회적경제'라는 우리말 개념의 의미군(意味群)들 가운데 비교적 공감대가 넓은 부분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유럽의 담론을 텍스트로 삼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전제가되어야 할 원칙 하나는 '사회적경제'라는 우리말이 연상시키는 한국 사회의보편적 상식과 용례가 정의(定意)의 다른 기준들과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그것이 '경제'인 이상,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네 가지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유럽의 économie sociale이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 조직형태를 명시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할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말의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의 영역들을 연상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회적기업과 구별되는 지점으로, 사회적기업이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이라면, '사회적경제'는 그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화폐적/비화폐적 자원을 생산하거나 교환하거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부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기업'은 넓은 의미의 '사회적경제'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에는 생산 조직 뿐 아니라 생활협동조합이나 지역화폐운동(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 LETS)처럼 소비나 교환을 전문으로 하는 경제조직들을 모두 망라한다고 하겠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기준들은 흔히 유럽의 사회적경제의 정의에 관한 구분법이 제시하는 영역들인데, 유럽 담론의 개념 기준이 우리 사회에도 적용타당한가를 따져보고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변형도 모색할 것이다. 보통유럽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개념은 ①조직의 목적에 관한 규정, ②조직의 형태에 관한 규정, ③운영 원칙과 규범적 원리에 관한 규정, ④지원 법규에 관한 규정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라빌(Laville)은 여기에 ⑤사회경제적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기도 한다(Levesque & Ninacs, 2000: 112-129; 장원봉 2006: 32-37).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역시, 사회적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

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유럽에서 '사회적경제'란 용어가 처음 탄생했을 때 핵심은, 자본가 개인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이익추구를 가능케 하는 조직들을 하나의 부문으로 묶어 활성화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요, 정치적 비전의 제시였다. 그러나 지배적인 시장경제에 대해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입장을 포기하는 순간, 사회적경제는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주류 경제의 정치적 성격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존의 시장경제 체제에 순응해버린 뒤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더 이상 비자본주의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사회적경제가 '대안 경제' 혹은 '연대의 경제'라는 이름으로 본연의 의미를 되찾게 된 것은, 샤니알과 라빌의 말대로, 1970년대부터 프랑스의 제3섹터 진영이 '사회연대에 기반한 경제'라는 관점을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리하여 사회적경제 개념의 출발점은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무한경쟁의 시장자본주의에 반대하고, 그것의 폐해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라는 데 있다. 이것은 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우 선하는 경제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폴라니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의 경제 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 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를 말한다.

'경제' 앞에 붙은 '사회적'이라는 관형어는 보통 '개인적', 또는 '개인을 우선시 하는'이라는 의미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는 인간의 모듬살이를 개별화된 존재들의 집합이 아니라 통일된 규범을 가진 공동체라고 보고 그러한 '공동체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가리킨다. 예컨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social goal)을 지닌 기업을 말하는데, 이 때 사회적 목적이란 '공동체(community)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유익하게한다는 보편적(general) 목표는 수많은 구체적(specific) 목표들로 표현될 수있는데, 특정 범주의 시민들(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돌봐야할 아동이나노인이 있는 가정, 이주노동자들,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지닌 욕구를 해소한다든지, 취약계층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말한다(Defourny & Nyssens, 2006: 30). '왈룬사회적경제위원회(CWES)'이의 의뢰를 받아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의한 바 있는 드푸르니는

<sup>7) &</sup>quot;프랑스에서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연대적경제가 다소간 갈등적인 성격으로 발전했던 데 반해,

이 부분을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적경제도 전체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지향하는 경제라는 것이 개념의 내 포를 구성하는 일차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직의 형태에 관해서는 결국 개념의 외연, 즉 범주의 문제이므로 2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셋째, 규범적 원리에서는 과연 사회적경제가 자본이나 국가 권력으로부 터 자유롭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느 냐의 문제가 관건이 된다. 유럽 제3섹터 연구소들의 네트워크인 EMES®)는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관한 9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가 사회적경제의 규범적 요건으로 원용해볼 수 있는 것은 ①공동체의 이익 을 지향한다는 명확한 목표(An explicit aim to benefit the community), ② 고도의 자율성(A high degree of autonomy), ③소유자본에 좌우되지 않는 의사결정력(Decision-making power not based on capital ownership), ④이 윤 배분의 제한(Limited profit distribution) 등이다.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 하는 사회적 목적에 관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첫 번째 요건으로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고, 자율성과 자본에 좌우되지 않는 의사결정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요건으로 언급하고 있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유 및 자율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1원1표주의'가 아니라 '1인1표주의'에 입각해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가입과 탈퇴를 자유 롭게 하며, 국가권력이나 자본권력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는 조직이어야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이란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 개념

프랑스 이외에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받아들인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흐름과 이에 자극받은 전통적 '사회적경제',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경제'를 받아들이게 된다. 불어를 사용하면서 프랑스의 상황에 민감한 벨기에 왈룬지방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문제에 맞서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의 영향으로 1988년 '왈룬'사회적경제'위원회'(Conseil Wallon de l'Economie Sociale: CWES)가 결성되었다. CWES는 경제학자 드푸르니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1990년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채택하였다."(엄형식, 2008: 52)

<sup>8)</sup> EMES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등 제3섹터에 관해 연구해오던 학자 및 연구자들이 보다 긴밀하고 협동적인 조사와 연구를 위해서 1996년 유럽연합(EU)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립한 네트워크이다. 최초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제목,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의 철자를 따서 EMES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이들의 관심 주제는 제3섹터와 같은 보다 넓은 영역이다(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Available: http://www.emes.net/index.php?id=2).

이 처음 탄생하고 발전해온 유럽의 근 ·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국가의 개입 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조건이었고, 오히려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였다. 그리고 이러 한 전통의 유산은 오늘날 사회적기업의 성격에도 남아있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9들 가운데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얼마든 지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호작업장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은 장기적으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기업들은 유럽 대다수의 나라에 있는 보편적 인 형태이다(Defourny & Nyssens, 2006: 15). 따라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가 아닌가의 여부가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받더라도 첫 번째 기준—'그 경제조직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가' 하는 점이다.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사회계층 간의 수직적 연대와 호혜성의 정신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한, 국가의 개입 자체를 탓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과 자율 성의 상실이라는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예산 보조를 받으면서도 독 립성을 잃지 않는 선을 정확히 유지하는 데는 구성원들의 특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원 법규와 관련해서는 2년 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생겨서 정부는 이 법규가 인증한 사업체만을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제3섹터의 번영과 활성화를 모색하는 관점에서는 협소한 법률적 정의를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다하더라도, 이 때 사회적기업이란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의 폭넓은 개념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관점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경제활동의 형태에 주목한다. 연대성에 바탕한 경제이므로 시장 부문 뿐 아니라, 재분배와 호혜성의 원칙이 통용되는 부문까지도 포괄하는 것이고, 따라

<sup>9)</sup> 흔히 우리나라의 정부 관계자들은, 사회적기업이란 궁극적으로 재정상 완전자립을 이루어서 정부로부터는 일체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소치이다. 다비스터(Davister) 등은 유럽의 노동통합 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WISE)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가장 오래된 형태인 제 1유형은 장애인들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장기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sheltered employment"(Ireland, Portugal), "sheltered workshop"(Belgium, Denmark), "Samhall network of sheltered workshops"(Sweden) 등이 그것이다(Defourny & Nyssens, 2006: 15).

서 시장 판매를 통한 상업 활동, 공공자금의 조달, 기부 및 후원금의 모집, 비화폐적 자원봉사활동 등을 모두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형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모든 자원의 혼합을 용인할 뿐 아니라, 동시에 시장 판매 수입이 없는 비상업활동의 경제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부분적이더라도, 시장에서의 상업 활동과 혁신적 경영을 반드시 필요조건으로 하지만, 사회적경제에 속한 조직 가운데는 지역화폐운 동(LETS)처럼 철저히 비시장적 활동을 하면서도, 앞서의 사회적 목적과, 운영 및 규범적 원리들을 지켜나가는 경제조직이 있을 수 있다.

유럽의 담론에서는 다소 애매하게 처리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상호관계에 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그림 1>을 놓고 설명하자면,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들 가운데 앞에서 제시한 기준요건들(사회적 목적, 자율성 및 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규범적원리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협동조합과, 비영리민간단체들 가운데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의 경제활동과 무관한 단체들을 제외한 엔지오(NGO)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여기에는 당연히 '사회적기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주로 생산에 관여하기 마련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의 부분집합이고,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경제활동 조직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 2) 개념의 범주

앞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공동체 보편의 이익을 추구하는 명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자본의 힘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율적인 경제조직들의 집합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조직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

#### (1)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

우선,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기기 시작한 사회적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양극화와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돌봄노동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 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가 하면, 폐자원을 수거·재활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이나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은, 보살핌과 지원 을 필요로 하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을 개선하는 재활용 사업 역시, 고용 창출의 효과 외에도 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 그 유익함이 돌아가는 것이니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경제 에 포함되는 사회적기업이란 노동부의 관련 인증을 받은 기업만을 가리키 는 것은 물론 아니며,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따르면서 스스 로를 사회적기업 내지 준(準)사회적기업이라 인식하는 모든 사업체들까지를 포괄한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자활공동체의 경우도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자활공동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안적 고용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를 제도적으로 시행한 경우로서, 오늘날 자활공동체는 근로빈곤층이 기존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노동조건에 서 노동통합을 이루고,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이며 사회연 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황미영, 2007).

그 밖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역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기초수급자 대신 그 이상의 차상위 실업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해서 참여자 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알선하도록 위탁하는 제도이므로, 공익적 목표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보호작업장과 같은 직업재활시설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장애인들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근로의 기회와 기술·기능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나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험되었던 노동자협동조합의 유형은 대개 열악한 조건 속에서 현실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지만, 노동과 자본이 일치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의 생산조직으로서 발전가능성은 늘 잠재돼 있다고 하겠다.

#### (2) 생활협동조합과 의료생협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조직 가운데 소비영역의 대표 주자는 소비자협동조합인 생협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는, "올바른 소비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의 보급", "자발적 생명문화의 창조와 확산", "협동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운동" 등 (박봉희, 2008)으로 표현된다. 1970년대에 생필품의 구매가 어려웠던 농촌, 산촌을 중심으로 마을 구판장 형태로 시작되었던 소비조합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도농(都農) 간의 공동체적관계 회복을 지향해왔다. 그리고 1999년 생협법의 제정을 계기로 조직적 기반이 더욱 단단해졌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2005년 현재, 전국의 생활협동조합은 176개 단위조합에, 조합원이 33만 7천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18개의 의료생협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생협역시, 제도적 측면에서 비영리 조직으로 규정될 뿐 아니라, 규범적 측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자립적 관리 운영, 참여의 자발성 높이기 등을 부단히자기 과제로 추구한다'(황인섭, 2004: 1588-9)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일원으로서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시장이나 정부가 공급하는 기존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한 공동육아 조직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보육서비스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경우이다. 국공립 유아원보다 높은 질의 보육서비스를 선호해서 생겨난 유럽의 제3섹터 부문 유아원들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모들의 재정 분담과 교육 및 운영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처음 시도된 공동육아협동조합은 2007년 현재, 전국에 61개가 있다.

노대명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구성과 성격적 특징을 <표 1>과 같이 구분한 바 있다. 그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같이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사업 단위를 광의의 사회적기업으로 분류해서 이것이 다시 사회적경제의 한 범주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노대명, 2008: 76). 이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유럽에서는 당연히 사회적기업에 포함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더라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한, 사회적경제로 보아야 마땅하다는 앞서의 필자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진다.

<표 1> 한국 사회적경제의 구성과 특징

| 성격 I     | 성격Ⅱ      | 유형 분류        | 세부 설명               |  |
|----------|----------|--------------|---------------------|--|
| 국가       | 정부 의존    | 공공지원형        | 장애인 보호작업장 / 노인생산공동체 |  |
| ▼        | <b>A</b> |              | 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  |
| ▼        | 0        | 일자리사업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  |
| 0        | ▼        | 공공지원형        | 자활공동체               |  |
| 0        | 자립 지향    | 사회적기업        | 노동부 사회적기업           |  |
| 사회적      |          | 미기 기 기 이 기 기 | rlol 그 ㅇ 키 쾨        |  |
| 경제       |          | 민간 지원기관      | 대안금융기관              |  |
| 0        | 비영리      |              | 시민단체 (서비스 공급형)      |  |
| 0        | <b>A</b> |              | 노동자협동조합             |  |
| <b>A</b> | 0        | 사회적경제 조직     | 생활협동조합              |  |
| <b>A</b> | ▼        |              | 농협/수협/산림조합          |  |
| 시장       | 영 리      |              | 신협/새마을금고            |  |

출처: 노대명 (2007).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또한, 엄형식은 벨기에 '왈룬사회적경제위원회'(CWES)의 사회적경제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의 중시라는 네 가지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새로운 사회적경제로 구분한 후, 전자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을, 그리고 후자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엄형식, 2008: 121-3).

<표 2> 한국 사회적경제의 구성

|           |          | 농업협동조합    |
|-----------|----------|-----------|
|           |          | 수산업협동조합   |
| 전통적 사회적경제 |          | 산림조합      |
|           |          | 새마을금고     |
|           |          | 신용협동조합    |
| 새로운 사회적경제 | 민간단체     |           |
|           | 네ㅋㅇ 최도구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 새로운 협동조합 | 노동자협동조합   |
|           | 사회적기업    |           |

출처: 엄형식 (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123

그런데 이 두 가지 분류법은 모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관제 협동조합까지를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협 동조합을 사회적경제의 대표 유형으로 보는 불어권의 개념을 가감 없이 대 입시킨 결과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분류는, '오늘날 한국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조직 유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수 백 만 명의 조합원과 수백 조 원의 사업규모를 가진 그들 관제 협동조합들 을 제외시킬만한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만든다. 이에 관해서는 3절에 서 다른 쟁점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 (3) 경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일반 결사체의 형태를 띤 비영리 경제조직들의 종류는 무수히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대표적인 한두 가지 경우만을 예시하기로 한다.

지역화폐 운동(LETS)은 미리 등록한 회원들이 그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서로 거래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2000년에 생겨나 현재까지 지속돼 오고 있는 대전의 "한밭레츠"는 580명의회원들을 중심으로 '두루'(=1원에 해당)라는 화폐단위를 사용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거래한다. 이 조직은 지역 내에 의료생협("민들레의료생협")과공동육아협동조합(현재의 "꽃 피는 학교")을 먼저 결성해서 기반이 잡히자,주로 양쪽 조합원들을 가입회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정금액의 회비를 내고 가상의 화폐를 이용해서 자신이 거래하고 싶은 재화나 서비스를홈페이지나 등록소에 등록을 하면, 그 결과가 회원들에게 알려지고 등록소에는 주고 받음의 결과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록으로 남는다. 이렇게돈의 유무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거래를 하고, 개인이 필요한 만큼 '두루'라는 돈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인데, 철저히 비시장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각종 생활용품들을 재활용해서 바꾸고 나누어 쓰는 환경운동 단체를 교환 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한다면, 각계로부터 금품을 모집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배분해주는 기관은 분배 영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사회연대은행" 같은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들은 빈

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벌이는 각종 복지사업이나 개인(혹은 공동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어, 호혜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경제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 3) 개념의 외연에 관한 쟁점들

유럽에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던 때부터 협동조합은 대안 경제의 대표적인 형태로 분류돼 왔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유형을 논할 때에도 유럽의 분류법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학자들 사이에서 협동조합은 상호공제조합 및 민간단체와 함께 주된 패턴으로 거론되며,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명칭과 형식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동 범주에 포함시키기 일쑤이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였던 노동자들이 시장경제에 맞서서 자구책으로 조직 한 19세기 유럽의 협동조합과, 5·16 군사쿠데타 이후 "조합원들의 자율이 아닌 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강제로 설립된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 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정병호, 1983: 33)"을 과연 비슷한 성격의 조직으로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인가? 1961년 군사정권은 기존의 농업협동 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농협법을 제정하면서 실질적인 농 협의 공사화를 진행했으며 이는 자발적인 협동조합운동이 발전하지 못하도 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장종익, 2002 ; 장원봉, 2006: 237-8에서 재인용). 이 러한 사정은 수협과 산림조합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의 힘센 이익집단과 자기 이익을 표출하지 못하는 주변집단이 나뉘는 정치적 소용 돌이 상태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한 협동조합은 반(反)협동조합적으로 전개 된 경제개발 정책 하에서 역설적인 동반자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협동조합 은 자기가 아닌 남들의 자본축적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존립해온 것이다' (정병호, 1983: 39).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농협 등은 협동조합이라는 명 칭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른바 '사회적경제'의 네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생 겨나고 발전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기계적 명목론에 치우쳐 협동조합이라 는 이름을 달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들을 사회적경제로 범주화 한다 면, 그 중에는 사회적경제의 개념 정의에 사용된 원칙들과 충돌하는 조직들 까지 포함되는 모순된 결과를 낳게 된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보면, "경제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개념 적용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이, 농협처럼 발전국가 체제에서 만들어진 조직은 국가의 권위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 로 민주화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 등을 들어서 보다 관대한 범주 화를 주문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적 관심은 과거에 한국에도 '사회적경제'로 부를만한 조직들이 넉넉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대표할만한 유형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역사적 과정에 투영된 조직의 성격을 불문하고 명칭과 형식만 을 분석의 근거로 삼는다면, 현재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240만명의 조합원과 1,200여개의 지역조합을 가진 농협, 17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수협, 조합원 50만명의 산림조합 등이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범주화 는 우리의 경험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사회적경제의 비 중과 역량을 키워서 경제를 민주화 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적 측면에서도 시 사해주는 바가 없다. 또한 명목론에 입각해서 상호공제조합을 사회적경제의 주된 유형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수 있는 공제조합의 예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름만 '협동조합'일 뿐 결성과정과 현재 조직의 성격이 협동조합의 원형과는 거리가 멀고, 상호공제조합은 사례 자체가 매우 드문 한국 사회에, 외국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회과학의 개념도 어떤 사회의 역사적 발자취를 반영한 집단적 경험 의 산물인 바,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의 대표 유형을 협동조합, 상호공제조 합, 민간결사체로 규정하게 된 것은 그런 유형의 조직들이 프랑스 사회에 실제로 다수 존재해왔고, 동시에 그 조직들이 사회연대의 정신과 민주적 원 칙들을 비교적 충실히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럽 개념의 형식이 아닌 규범적 내용을 중심에 놓고 따진다면,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 생활협동 조합, 그리고 경제활동에 관여하는 수 백 가지 종류의 민간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경제활동 영역별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예

| 경제활동의 영역 | 사회적경제 조직의 예                             |              |  |
|----------|---|--------------|--|
| 생 산      |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적일자리<br>사업조직, 노동자협동조합 등 |              |  |
| 소 비      |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br>조합 등            | 로컬푸드 운동 네트워크 |  |
| 교 환      | 지역화폐, 아나바나운동 단체 등                       |              |  |
| 분 배      | 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 등                   |              |  |

이 가운데 생협과 같은 소비자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쟁점이 등장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협동조합은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내부자들을 위한 조직이다. 다시 말해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자조(自助)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보다 넓은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열린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의기준이었던 바, 구성원들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살림> 생협은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 하지만 <한살림>은, 앞에서 말했듯이, 협동을 시스템화함으로써 사업자체가 목적이며, 사업이 곧 운동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직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1인1표의 평등한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주요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대표를 선출하여 사업과 운동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중 략) 이렇게모인 자본을 밑천으로 삼아 진행되는 사업과 운동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기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경영을 목표로 삼는다. 자발적인 이용과 비용 절감을 통해 생긴 잉여도 이후의 사업과 운동을 위해 적립하여 생명살림의 기초로 연결되도록 한다. 이처럼 자본주의 회사와달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들의 자치와 협동에 <한살림> 운동의 중심인 것이다. (중 략) 따라서 <한살림> 생활협동에서 전제가 되어야할 것은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생태적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다.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 '한살림'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자신이 속한 한 영역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생명의 전체 원리를 체득하려는 학습을 통해 지금 뿌리가 뽑혀 가는 농업 생산을 되살리고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윤형근, 2003)

또한 <두레> 생협은 2006년 여름, 수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의 수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대외 활동을 펼쳐왔다.

"우리 생산자는 소비자가 지킨다! …… <두레생협연합회>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던 한 가족과 같은 생산자들에게 끊임없는 격려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생산자를 돕는 관계를 넘어서 그들이 정성과 땀으로 일궈가고 있는 생명 농업을 함께 지켜가겠다는 소비자로서의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소비자들의 이와 같은 생산지에 대한무한한 애정은 지금까지 <두레생협연합회>가 지향해 왔던 생산자와 소비자의 얼굴이 보이는 관계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 략) 뿐만 아니라 조합원 생산지 방문, 교류행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물품"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해오고 있다."(두레생협연합회, 2006)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에 관해서는 내부 구성원들끼리의 폐쇄적인 조직이라는 이유로 추구하는 가치의 공공성을 낮게 평가하는 일부의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는 위의 인용 사례들을 통해서 그것이 매우 편협한 시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생협들은 학교급식, 광우병소 수입, 한미FTA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발언과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지역운동 및 시민운동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자신들의 조직 울타리 바깥에 존재하는 더욱 큰 체제의 문제에 부단히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개혁하려는 사회적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자본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민주적 운영을 앞세우는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 5. 결론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사회적경제에 거는 우리 사회의 기대가 커지는 것은 분명 긍정적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 개념의 윤곽이 비슷하게나마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이는 왕성한 논의는

오히려 혼란과 오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이들 용어가 학문적 논의의 장을 넘어 실천 운동의 영역에까지 확장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글은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우리나라의 역사와 사회운동적 맥락에서 개념화 하고자 하였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사회적경제 개념을 소개하고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개념의 구성요소를 새롭게 정리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를 정의할 때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삼을 것인가(개념의 내포)와 사회적경제에는 어떤 유형의 조직들이 포함될수 있는가(개념의 외연) 하는 것이 이 글의 관심사였다.

사회적경제 개념의 출발은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무한경쟁의 시장자본 주의에 반대하고, 그것의 폐해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라는 데 있다. 이것은 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라는 뜻으 로도 해석된다. 폴라니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의 경제행위 가운데 상호배려 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를 말한다.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관형어는 인간의 모듬살이를 개별화된 존재들의 집합이 아니라 통일된 규범을 가진 공동체라고 보고 그러한 '공동체의 이익을 지향하는'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하여 사회적경제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요소는 사회적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성원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는 자본의 발언권을 중시하는 시장적 기제에 반대하므로 자본에 의해 이윤이 배분되는 것을 제한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의사결정을 선호한다. 그런 점에서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고 민간이 주도하면서 자율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세 번째 구성요소이다.

이상이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공통점이라면, 사회적경제는 생산 뿐 아니라 소비, 교환, 분배 등 일체의 경제활동 영역에 관여하고 있는 조직들을 총칭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을 부분집합으로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의 상업활동을 전제로 하는 데 반해서, 사회적경제는 시장에서의 상거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의 보호작업장 같은 공공지원형 일자리 사업도 사회적경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를 정의할 때 규범적 기준들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면 그 범주가 너무 협소해져서 실천운동의 전략적 측면에서 쓸모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 접근으로 치우치면 역사적 맥락에 깃들어있는 본질을 놓치기 마련이다. '경제의 정치적성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사회적경제'가 어떤 정당성도 가질수 없다'는 샤니알과 라빌(2008)의 충고를 상기한다면, 한국적 맥락의 정의에서도 '시장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대응으로서 호혜와 연대의 원리 속에서 발생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적일자리사업 조직,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의 생산조직과, 생협 등의 소비자협동조합 및 공동육아협동조합, 자선모금단체와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 지역화폐운동 단체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생산과 소비 영역을 결합한 로컬푸드 (local food) 운동 조직이나 공정무역 운동 단체 등 사회적경제에 속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조직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로 명 칭을 변경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생산영역의 문제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오 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으 리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것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더욱 향상되어야 마땅하지만, 동시에 소비 혹은 분배와 같은 다른 경제영역에서의 호혜적 조직화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참고문헌]

김승현 (2008). 『비영리부문의 비교연구: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 서울: 집문당 노대명 (2007).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권 2호, 35-71

노대명 (2008).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보건복지포럼』, 2008년 4월호, 62-85 두레생협연합회 (2006). 우리 생산자는 소비자가 지킨다(2006년 8월 7일자 보도자료), Available: http://www.dure.coop/

뮝크너, 한스 & 강일선 (2006). Social Economy and Promotion oriented Economics: How do We Define a Common Denominator for Enterprises in Social Economies, Co-operatives and Non-profit Organisations?".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24권 1호, 203-224

박봉희 (2008). 생활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경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워크숍 『사회

- 적경제의 모색과 실천』(2008.10.7) 발표문
- 샤니알 & 라빌 (2008). 프랑스 시민사회의 경험: 정치,경제적 차원 간의 간극을 잇기 위한 시도. 에베르스 & 라빌 편저(2008).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복지-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 서울: 나눔의 집
- 안하이어 & 사이벨 (2002). 『제3섹터란 무엇인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 아르케
- 엄형식 (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서울: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 오코넬, 브라이언 (2008). 『인디펜던트 섹터-미국의 비영리부문의 역사』. 서울: 아르케
- 윤형근 (2003). 생활협동운동과 한살림. 전국소식지『한살림』, 8호. Available: http://pds.hansalim.or.kr/
- 장원봉 (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눔의 집
- 장원봉 (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주최 활동가대회(2008. 12. 11) 발표문
- 정병호 (1983). 한국협동조합운동의 회고와 전망.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 구』, 1권 1호, 31-45
- 황미영 (2007).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의 자활공동체의 실태와 전망.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5권 2호, 73-104
- 황인섭 (2004).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비영리 조직성 및 특징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 구』, 17권 6호, 1569-91
- Defourny & Nyssens (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M. Nyssens(ed.),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NY: Routledge
- Evers, Adalbert (1995). Part of the welfare mix: the third sector as an intermediate area. *Voluntas*, 6(2), 159-82
- Evers, Adalbert & Laville, Jean-Louis (eds.) (2004). *The Third Sector in Europe*, UK: Edward Elgar Publishing Ltd.
- Laville, Jean-Louis (2001). France: social enterprises developing 'proximity services'. C. Borzaga & J. Defourny(eds.).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 Nyssens, Marthe (ed.) (2006).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NY: Routledge
- Salamon, Lester M. & Anheier, Helmut K. (1997).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A Cross-national Analysi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 심포지엄 토론결과













# 심포지엄 토론 결과(요약)

| 권희태<br>실 장 | <ul> <li>▶ 시장낙오 계층에 대한 지원에 일정부분 공감</li> <li>▶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li> <li>▶ 지속발전을 위한 시장을 어떻게 열 것인가?</li> <li>▶ 이은애 단장의 사회적기업의 오해와 진실에 공감</li> <li>▶ 사회적경제센터 역할</li> <li>- 생태계, 다양한 기관 조정 및 조율에 초점</li> <li>- 중간 지원기관</li> <li>▶ 기업가를 어떻게 발굴하며, 사업가에 대한 자극을 어떻게 줄 것인가?</li> <li>▶ 리더를 발굴하며, 사전교육 및 안내가 센터에서 선행되어야함</li> <li>▶ 포럼구성 등을 통한 저변확대</li> <li>▶ 판로문제에 대한 고민</li> <li>- 공공구매는 제도상 어려움</li> <li>- 업생인으로 사회적 욕구 조사 및 다양한 이해 조절기제필요</li> <li>▶ 판로를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li> <li>▶ 사회적 기업 성공모델 창출</li> <li>- 예비사업자들이 진입용기를 갖도록 해야 할 것</li> </ul> |
|------------|---|
| 유정규<br>이 사 | <ul> <li>▶ 사회적기업이 성립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의 속성으로 사회적기업의 논의가 진행됨</li> <li>▶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함</li> <li>▶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해석</li> <li>-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및 사회적 기업 방향 관련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li> <li>▶ 충남형사회적기업관련 사회적기업의 유럽과 미국, 동아시아지역의 비교</li> <li>- 유럽: 자본주의가 발전한 과정에서 자본주의 경제 폐해와</li> </ul>  |

소비자 배려에서 시작,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 범주에 포함

- 미국: 자산적 기업가, 윤리적 기업가 등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서 사회적 경제를 발전 시킴, 사회적기업가를 강조
- 한국: 유럽의 전통적 사회적 경제 이해와 미국의 현실적 관점을 도입
- ▶ 화폐적인 부분만 추구할 것인가? or 비화폐적인 부분도 포함할 것인가?
- 미국: 화폐적 부분추구
- 유럽: 화폐적 부분+비화폐적 부분추구
- 한국: 화폐적 부분+비화폐적 부분추구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화폐적인 부분만 보고 있으므로 비화 폐적 부분도 포함해야 할 것
- ▶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사회적기업의 수지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 사회적기업가 양성
-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문제
- 중간지원조직역할 육성
- ▶ 사회적기업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 후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
- 현재 진행 방식은 홍보절차→심사→지정 ⇒ 화폐적 부분 강조
- ▶ 다양한 정책들을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
- 깔때기역할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 사회적 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시장을 어떻게 마련하나?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권
-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는 공공기관의 의지문제
- 의지가 있으면 도청에서 하는 일부터 우선해야함
- ▶ 이윤배분제한규정을 충남실정에 맞도록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할 것인가?
-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들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기 어려움
- ▶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의 대상을 어떻게 가이드 할 것인가?

- 농어촌 지역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정한 가이드가 필요하면 이에 따른 시설 비용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
- ▶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사회적기업의 수요에 대한 인식)
- 보조금의 경우 다른 단순보조와는 성격이 다름, 시장형성 과 연계
- 사회적기업의 지속성과 수지균형에 대해 센터에서 인식개발
- ▶ 사회적경제의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 센터는 단순히 지원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충남지역의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반을 만들 어가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
- 순환과 공생의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이 불가피한 일이며,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도구로써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단기적 실적이나 건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님
- 내생적 지역 발전위한 패러다임전환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 필요
- 도전체의 산업전반의 정책으로 고민
- ▶ 공동체적 기반을 어떻게 갖느냐?
- 충분히 숙성되고 준비된 공동체기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음
- 주민역량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느냐에 포커스를 맞춰 고민
- 지역주민의 역량개발
- ▶ 사회적경제의 유력한 조직모델은 협동조합 내지 자주관리 모델
- 상법상 주식회사가 가장 간편함
- 협동조합기본법이 없어 이해와 참여가 어려움
- 노동자협동조합, 주민 스스로 사회서비스를 생산하는 생활 협동조합의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도 차원에서 노력 이 필요
- ▶ 지역화폐 강화
-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 부족
- 지역화폐는 공동체기반을 강화, 전통적 협동경제기반을

## 김제선 이 사

흡수하며 사회적 경제유통망을 만드는데 유력, 로컬 푸드 방식거래 촉진수단

- 지역화폐의 모델을 만들어야함
- 협동조합의 문제와 지역화폐에 대한 고민 필요
- ex) 복지적 수단으로 자원봉사 교환지원
- ▶ 창업모태지원가정 만들기
- 충남형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탈락한곳을 집중지원, 컨설팅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곳을 찾아가 사업의 기본적 착수나 사업화 하는 과정을 연마·숙성하는 과정을 지원 하는 것이 중요
- 선주체화 후지원
- ▶ 중간지원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
-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자활기관 활용
- ▶ 지속가능한 운영능력구축
- 충남도내 안정적인 독립기금 마련
- 도 단위에 수요계층별 접근 필요

#### ▶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역할

- 도시의 경우 유력한 공동체는 교회공동체와 복지기관
- ▶ 중간지원조직역할
- 선정된 다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공동 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쓰거 나 연구하고 지원하고자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

#### ▶ 예산편성 문제

- 경제구조의 문제의 경우 자본주의 경제가 1주1표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대다수
- 경제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계속생기고, 권력의 문제에서 소외되는 경우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의 영역에서 개인적 경제가 아니가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
- 민간차원에서 조직화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과제
- ▶ 돈을 누가 만드는가?

## 김성훈 이 사

- 돈을 누가 만들어서 발행하고 유통시키느냐에 대해 새롭게 지역화폐 운동, 즉 돈을 모으는 운동을 해야 함
- 대표적 형태로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 ▶ 사회적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회적 회계를 성과 기준에 넣어서, 활동들이 얼마나 공공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이었는지 평가하는 틀을 만들어야함
- ▶ 사회전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 공공성의 문제
- 꼭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변화의 의지가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마련 이 중요
- ▶ 지역경제를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
-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략과 네트워크,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 복지 분야
- 정권이 바뀌면서 복지관련 연대 체제들이 없어져버림,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네트워킹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음
- ▶ 법률적 지위
- 협동조합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며, 법률관련 문제를 연대해서 같이 풀거나, 지자체이 법률적 개선 필요
- ▶ 즐거운 밥상
- 충남형사회적기업1호
- 자활공동체에서 시작
- 올해 천안시 결식아동 10억 위탁계약 , 마사회 2억 위탁 계약
- ▶ 자활공동체

## 박찬무 대 표

- 자활공동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지면 바로 지원이 중단
- 사회적기업의 지정 또는 인증에 대한 고민
- 충남지역의 자활센터 15개, 자활공동체 68개, 예비공동체 단계, 즉 자활근로 134개로 이들은 예비 사회적 기업
-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를 내실화 하지 못함
- 이 부분을 내실화하기위해 광역자활센터 필요성이 큼

- 전국7개의 광역센터가 운영되며, 성과가 높음 ▶ 정부보조금을 활용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 ▶ 사회적 가치or사회적 경제or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방향이 다름 -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주체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 ▶ 협의회구성 - 스스로 돈을 내고 인력을 내서 활성화하기 ▶ 세무처리 - 국고보조금을 받아 부가세를 냄 -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계산서라든 지, 부가세가 제외되는 부분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 ▶ 시군별 인프라 구축 ▶ 작년 천안에서 각계계층의 30여 명이 모여 교육받음 - 4회 정도 교육 후 큰 지역에서 큰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후, 시민주주방식의 사업체를 만들었음 - 20여 일 간 백만원~오백만원까지의 돈을 걷은 금액이 1억 800만원으로 희망칼국수 오픈 - 이런 사례를 통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12월 1일부터 사회적 기업 지정 ▶ 센터장에게 부탁 - 재화, 서비스에 대한 공동마케팅 - 부스활용, 소비자 초청을 통한 축제 겸 마당 제공 이상무 - 성공한 기업체들과 자매결연이라든지, 프로보노제도 활성화 ▶ 도에 부탁 - 지자체는 사회적 기업들의 열기와 성원과는 다른 방향 으로 가고 있음 - 지자체의 관심부탁 ▶ 사회적 기업을 통해 체험학습이 의무교육 채수범 - 학생에게 체험재료 무료보급의 길 만들어 주길 - 마을기업 신청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념 분명히 김성기 - 취약계층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 박 사 사회와 공동체 경제개발이라는 이념을 분명히 할 필요

▶ 지속가능성문제 - 의료생협이 가장 지속적 - 안성의료생협, 안산의료생협 - 한국의 경우 흑자가 나는 조합원수는 2천세 대 정도 - 의료생협은 내부적으로 판로를 획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있음 - 정책에서 지원 →협동조합방식 ▶ 공공시장에 대한 블루오션전략 필요 - 공공시장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을 개발하는 노력 이 병행 되어야함 ▶ 비화폐적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 이은애 ▶ 연대경제를 위해, 자발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시민 섹터 안 단 장 에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중요 ▶ 화폐적 가치와 비화폐적 가치를 같이 봐야한다는 의견에 동의, 현실적으로 한계,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야할 숙제 ▶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부처별로 해결되고 있지 는 않음 ▶ 자활공동체의 경우 보조금을 수입으로 하는 사업유형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고민 ▶ 사회적기업법은 있지만 법이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귀희태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하여야 공공구매로 실 장 이어질 것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한 포럼의 기회제공 ▶ 협동조합이나 지역화폐문제는 시군차원에서 핸들링 해야 효과 있을 것이며, 도에서도 일정부문 지원 ▶ 창업모태지원가정이나 탈락한 조직을 다시 인큐베이팅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일 센터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 사회적기업과 시민사회단체도 사회적 스스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야 함

## 심포지엄 토론 결과(전문)

#### 〈권희태 실장〉

시장낙오계층에 대한 지원에 일정부분을 공감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지속발전을 위한 시장을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포럼을 만들어 저변을 확대할 것이다. 판로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공공구매는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

이은에 단장님의 말씀의 오사카사례는 직접도입이 현행법상 적용하기 어렵다. 지역 내 사회적기업 우선되도록 하는 법적장치는 없지만 고민해보겠으며, 공공구매는 자영업자들과 마찰할 가능성이 있다.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욕구조사 및 다양한 이해 조절 기제가 필요하다.

판로확보 문제는 사회적기업이 산출한 생산물 및 재화를 일정부분 시장에 맡겨야 하며 공공부문에서 어렵지만 공공구매에 대한 노력 및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지원 센터는 오늘 개소를 하였으며 사회적기업 17개, 이번 20개, 커뮤니티 비즈니스 22개 계획하고 있는데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많은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도록 해야 함.

**좌장:** 정책담당자로서 고민 및 사회적경제지원 센터에 대한 제언함

## 〈유정규 이사〉

지금 여론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성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의 속성으로 사회적기업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저의 의견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 진행 방향 의견 및 충남도의 충 남형 사회적기업에 대한의견을 말씀드리고자한다.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해 석은 논리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및 사회적기업 방향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

김성기 박사의 사회적 공동체 목적을 수행하는 경제적 범주 및 경제적 목적·사회적 가치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을 정의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 하지만 이는 단순하지 않고 논자에 따라 또는 유럽, 미국, 동아시아등 지역에 따라서는 이해의 폭이 다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정책을 이제막 추진해가는 우리입장에서 '어떤 해석을 해야 하는가?'를 과제로 해야 한다. 충남형사회적기업과 관련해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럽이나 미국의 논쟁점의 차이가 있다. 유럽은 자본주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한 과정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가져온 폐해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자본주의의 소비자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로 시작하였다. 유럽의경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민간단체나이런 것들을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미국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조직이나 조직행태의 성격이나 내용보다는 자산적 기업가, 윤리적 기업가 등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라 는 입장에서 사회적경제를 발전시켰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 적기업가를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유럽의 전통 사회적경제 이해와 현실적으로 미국적 관점, 즉 수직균형을 맞추려는 짬뽕된 느낌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화폐적인부분만 추구할 것이냐 비화폐적인 부분도 포함할 것이냐?'로써 미국의 경우 화폐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보며 그렇기 때문에 NPO라도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영리추구를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화폐적 부분과 비화폐적부분을 같이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 의 경우 현 주장은 화폐적부분과 비화폐적 부분을 포함해서 봐야한다는 주 장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화폐적부분만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사회적기업의 수지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이다. 우리나라의 화폐 중심적접근을 비화폐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실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 첨예한 논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문제,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 역할육성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충남형사 회적기업에 대한 제 생각은 비화폐적부분도 충남형사회적기업에 포함시켜 야한다고 생각한다.

충남형사회적기업의 육성에 있어서 첫째, 사회적기업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지 원센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충남의 이해를 높이는 사 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식을 개선하고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선행된 후에 또는 병행된 후에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작년에 지정된 충남형사회적기업, 올 초 지정하려고하는 충남 형사회적기업, 올해 말의 충남형사회적기업지정 예정, 이렇게 하면 올해 60~70개의 충남형사회적기업이 될 텐데 현재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사회 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보다는 그냥 홍보절차를 거쳐서 심사하고 지정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비화폐적인 부분은 빠져있고 화폐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이대로 가서는 만족성을 높일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 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

둘째,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 중앙에서는 수도꼭지가 여러 개 있고, 이에 따라 지역에서 혼란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깔때기로 만들어서 하나의 통에 넣는 역할, 즉 깔때기역할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이러한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시장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로 시장형성노력이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공공기관 우선구매권이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려는 공공기관의 의지 의 문제로써 의지가 있으면 도청에서 하는 일부터 시장 형성하는데 노 력해야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기업육성을 하기위해 '이윤배분제한규정을 어떻게 충남실 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할 것이냐?'로 이윤배분제한규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영농조합법인 등 이런 법인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어렵다. 따 라서 최근에는 유연하게 해석은 하지만 농어촌의 지역의 경우 사회적 복지가 도시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이윤배분규정을 어떻게 유연하게 적 용할 것이냐? 의 문제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중 하나가 '사회적기업의 대상을 어떻게 가이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농어촌 경우예산이 많이 들어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정한 가이드가 필요하며 시설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관련하여 특히 우리나라 경우 사회적기업의 수요에 대한 인식이 골치 아픈 상황이다. 예를 들면 보조금의 성격,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단순보조와 다른 문제이다. 이를 일반적으로 용어만 보조로 하여 무조건 공짜로 주는 것으로하는 개념과 다르고 시장형성과 연계해서 봐야한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성과 수진균형에 대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인식시키는 논리를 개발해야한다.

**좌장:** 공동구매, 사회적기업의 영리문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윤문제, 사회적경제에 대한 용어로 접근하였으며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른측면도 있다. 초기단계기 때문에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 〈김제선 이사〉

한국 행정역사에 사회적경제의 '계'라는 것이 자치행정조직에서 만들어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사회적경제의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충남지역의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반을 만들어가는 센터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순환과 공생의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이 불가피한일이며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도구로써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로 일을 해야지, 사회적기업 컨설팅 건수라든지, 몇 개 기업이 살아남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이다. 구체적 목표를 정하는 것은 좋으나단기적 실적이나 건수를 평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생적 지역발전을 하기위한 패러다임전환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유정규이사의 말도 있지만 경제통상실의 정책이 아닌

도 산업정책전반에서 결합되어 고민되어야할 것이다. 저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수익모델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숙성되고 준비된 공동체기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공동체적 기반을 어떻게 갖느냐?' 주민 역량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느냐에 포커스를 맞춰 고민해야할 것이다.

지원의 초점을 사회적경제의 주체인 '주민역량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고민을 가져야한다.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지역의 인적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인데 핵심은 지역 주민을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의 주민역량개발 시도방식이 '협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발전해보자하는것이 사회경제의 문제의식이다. 공동체적기반을 갖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가장 편리하다. 하지만 원래 사회적경제의 유력한 조직모델은 협동조합 내지 자주관리모델의 회사지만, 사회적기업에대한 우리의 생각은 노동자협동조합이지만, 현재는 특수입법형태의 입법협동조합들은 많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이 없으며, 이해하기도 어려워 참여가 어렵다. 노동자협동조합방식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 사회서비스를 생산하는 있는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이 사회적경제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형식으로써, 협동조합을 잘 만들고 진행할 수 있는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내년은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도차원에서 그러한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공동체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각 부처의 관심사이지만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지역화폐는 공동체기반을 강화하며 전통적 협동경제기반을 흡수하며 사회적경제유통망을 만드는데도 유력하며, 로컬푸드와 같은 방식의 거래에도 촉진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지역 화폐모델을 작게 든, 크게 든 만들어야한다.

서울은 'S머니' 도입해 복지적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일부 서울자치구는 주민의 직접적 교환수단으로 지역화폐를 고려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를 충남차원에서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를 고민해야한다. 도

단위 복지적 수단으로 자원봉사를 교환하고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도입하든지, 사회적경제에 걸맞은 형식으로 협동조합의 문제와 지역화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주된 방식이 창업 성숙기의 본격적인 사업 수행할 수 있는 단위들에 지원하는 것을 공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쓸지 모르거나 혹은 공공기관의 돈을 어떻게 쓸지만 계획하고 상품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아니라, 사실상의 보조금 집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있다.

따라서 창업에 기반이 되는 '창업모태지원가정'이라는 것을 충남사회 적경제지원센터는 시작해야한다. 충남형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응 모하거나 탈락한곳을 집중 지원하고, 또는 응모하려고 해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곳을 찾아가 컨설팅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지원되는 것이라 생각 한다. 또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사회적경제주체로 키 우려면 같이 일할사람을 모으고 모은 사람들이 할 일을 정하고 목적을 공 유해서 사업을 해나가야 하는 과정이 되어야한다. 현재 공모과정에서 준비 하는 수준이 낮은 편이므로 대안으로 '창업모태지원가정'을 시작했으면 한다. 부족한 상태로 시작된 곳 자체를 지원해서, 사업의 기본적 착수나 사업화하는 과정을 연마할 수 있도록, 숙성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원칙으로 창업모태지원을 시작해야 충남형사회적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며, 주체역량이 커오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지원할 뿐이 라는 선주체와 후지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기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지역마다 자활기관들이 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지속가능한 운영능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내에서도 안정적인 독립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는 광역시권이고, 각 시군에서 계층별접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수요계층별 접근이 필요하다.

**좌장:** 국가나 지자체가 정책집행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지만, 투명하게 정량 화하여 성과를 나오게 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지역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

## 〈김성훈 이사〉

저는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역할을 하며, 마을기업관련 실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제 대덕구로 실사를 다녀왔다. 대덕구의 경우 8개 마을기업을 지원하였는데 주체가 목사2명, 사회복지기관 3명, 공동체 성향이 3군데이다. 마을기업이 '마을'이라는 개념,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볼 때 '도시지역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도시의 경우 유력한 공동체가 교회공동체나 복지기관이 공동체가 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모델을 만들거나, 물 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이 어렵고 뜻이나 의의가 좋지만 지역사회의 어 떤 필요와 만나는지와 연결하는 것이 잘되지 않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역할 을 하면서, 선정된 다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도 같이 쓰거나 연구하고 지 원하고자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전의 경우 예산부족의 문제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기본활동을 연구해야한다. 경제구조의 문제의 경우 자본주의경제가 1주1표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방식의 대다수이다. 경제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계속생기고 결과적으로 권력의 문제에서 소외되는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영역에서 개인적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해야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정치권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회적 경제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고 운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조직화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과제가 중요하다. 마을기업·사회적기업도 있고 지역 내 공동체도 있으면서 이런 것이 대형유통자금이나 금융자금에서 뺏기는 구조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정치에 참여할 것 인가?'라는 부분까지 생각해야한다.

개인적 경제가 갖고 있는 세계의 문제를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 기회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력을 만드는 일차적 책임은 본질적으로 시민들, 주민들에게 있다는 자각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

요한 문제는 돈과 관련해있다고 생각한다. '돈을 누가 만드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요즘 기술로써의 돈, 시대정신, 화폐전쟁 등 책에서 보듯 화폐발행을 사회추구집단이 발행하면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하면서 생기는 재산을 빼앗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어디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를 생각해보고 화폐를 누가 만들어서 발행하고 유통시키느냐에 대해서 새롭게 해보는 운동이 지역통화운동 돈을 모으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일부는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고, 보조금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돈을 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운동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끼리라도 돈 오만 원씩이든 십만 원씩이든 내서 활동가들이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 형태로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이 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비화폐적인부분의 문제, 사회적기업에서의 평가해야 할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수익을 얼마나 올리었나에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기준으로 사회적회계를 성과기준에 넣어서 활동들이 얼마나 공공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이었는지를 평가하는 틀이 있어야한다. 기본적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은 취약계층 국한된 제도적 특성들이 있다.

고용창출 취약계층 30%, 사회서비스 30%, 혼합형 20%,이며 기타유형 등은 발굴되고 있지 않다. 경쟁의 구조 하에서 사회적기업들도, 먹고사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물론 사회적기업의 의미는 있다. 공공성은 반드시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가 중요한 공공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꼭취약계층이 아니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 대신에 사회적변화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조건들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중앙경제나 대자본 경제와는 다른 '지역경제를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네트워크,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지원돼서 사회적기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한다.

특히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라든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민네트워크 활동을 실시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모였던 연대체제들이 다 없어져버렸다. 실제로 여 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네트워킹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새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 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법률적 지위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최초의 법인을 만드는 법률적인 지위문제는 협동조합기본법이나 이런 것들도 꼭필요하며, 또 하나는 생산하고 만드는 과정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뭐든 만들려면 제조업 허가라든가 이런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허가를 내기위한 최초의 기반을 만드는데 자본이 너무 없거나 관련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부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내놓는 것들은 법률적으로 따지면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연대해서 같이 푸는 방법을 세워주든지, 실제 이런 문제라는 측면을 지자체에서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박찬무 대표〉

즐거운 밥상은 도시락을 만드는 곳으로 항상 자랑스럽게 즐거운 밥상이 충남형사회적기업 1호라고 말하고 다닌다. 올해 천안시와 결식아동 위탁계약이 금액이 10억 정도이고 마사회와 계약을 맺어 간식 납품 건이 2억정도 된다. 그런데 두 가지 계약 건에 있어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 즐거운 밥상은 자활공동체이다.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자활공동체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천안시 결식아동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노력하였던 것은 **사회적기업의 공**신력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천안시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거는 자활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 이전에는 자활공동체라는 지정서를 가지고 지원을 해도 안됐었는데, 올해는 되었다. 이 얘기는 공무원이 한명 바뀌니까 그런 일이 되더라하는 이야기로써, 이것은 많은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다. 이것을 계속 부수려고 노력하고, 지원센터에서도 노력 하겠지만 저희도 같이 노

력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 스스로도 능력도 있어야하지 않나 생각을 했다.

실무적 이야기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자활공동체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지면 바로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다.** 공동체 창업을 하는 동시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자립구조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사회적기업의 지정 또는 인증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활공동체를 사회적경제 속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사회적기업은 상대적으로 설명하기가 쉽다.

정책적 방향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려는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충남의 지역자활센터가 15개 있고 자활공동체가 68개정도 된다. 예비공동체단계, 즉 흔히 자활근로라는 것이 134개 있고 여기에 1,44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활근로나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고그들이 사업단으로 만들어졌고, 공동체로 있는 부분들이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본다. 지역자활공동체에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때문에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를 내실화하고 있지 못한다. 그런 부분을내실화하기위해서 광역자활센터의 필요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미 전국에 7개 광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자활이 다른 곳보다 굉장히 성과가 높은 편이다. 그런 성과들이 사회적기업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가능성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가치실현보다는 정부 보조금으로 어떻게든 조달하기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현재는 사회적가치 또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양이나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이 너무 다르다. 이런 것들을 한 방향으로 보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주체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주체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들은 협의회를 빨리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스스로들이 돈을 내고 인력을 내서 활성화되었으면 하고 또 세무처리하면서 해결하고 싶은 부분인데 도시락대금은 국고 보조금인데 저희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부가세를 낸다. 사무처 규정을 찾아보면 세금계산서를 안 받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반매출은 아니더라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라든지 부가세가 제외되는 부분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하면 운영에 도움이 되고, 좋은 상품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각 시군·구별 인프라구축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장님이 안내해주셨으니까, 빨리 해결되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천안에서 작년에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에 대해 학습을 받아보고자 해서, 지역에서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30여명 정도가모였는데 여기에는 정치인,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사회적기업가 등 있었는데 4회 정도를 교육받았는데 김성훈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큰 지역에서의 큰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시민주주방식의 어떤 사업체 법인을만들자 하고, 20여 일간 금액모아서 일억 팔백만원정도를 모았다. 백만원에서 오백만원까지만 해서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해서 사회적기업 비슷한 것을 만들자고 해서 희망칼국수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한 부분들의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이상무〉

저희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센터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했을 때 판로가 어려우니 공동마케팅에 대해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KT연수원에서 했던 방식의 부스활용, 사회적기업의 처음 시작하는 곳을 한곳에 모아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겸한 마당을 만들어주셨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는 성공기업체들에 어떤 자매결연의 형태라든가 프로보노제도의 활성화라든지이런 것들이 시급히 현장에서 필요하다.

도청에 대한 부탁은 이러한 열기와 성원이 지자체에서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가까운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서류만 받아 행정처리만 하는 수준이지, 담당과장님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도 유사할 것으로 생각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다.

#### 〈자연공예체험관 채수범〉

10년간 공예작품을 하면서 3년 전 교과부에 요청을 했는데 지자체, 교수, 원장 및 학교 선생님들이 인정한다면 충청남도 도 차원에서 교육부 쪽으로 올리면 예산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아이들 체험재료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 원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사회적기업을 통해 우리가 지원이나 초등학교 저 학년 쪽으로 교육제도가 체험이 의무화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 도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체험재료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충 남사회적기업에서 선도 주자로 나서서 보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시군단위로 조성해주길 바란다.

#### 〈김성기 박사〉

유정규 선생님과 김제선 선생님의 말씀처럼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취약계층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공동체 경제개발이라는 이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결국은 단순히 고용지원 프로젝트가 정책프로젝트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 실제 공동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어젠다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성문제'도 중요한 토론과제인데 이와 연계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수지균형을 0을 맞추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기업에서의 회계와 같은 논리로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내부의 어떤 사회적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은 의료생협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생협은 수요와 공급을 내부 안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한국의 경험에서 흑자가 나는 조합원수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2,000세대정도면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성의료생협이나 안산의료생협 등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판로를 획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복지서비스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세운다는 어젠다를할 때, 협동조합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책어젠다를 쓰는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사실 모든 사회적 기업이 이것만으로 안되는 게 문제인데, 사회적 문제측면에서 공공시장에 대한 블루오션전략이 필요하며, 일반기업들과 당연히 충돌하는 부분이나오고, 이 부분에서 지자체장들이 결단해야한다. 정책이념의 실현이라는 정책 결정 선택의 차원에서 결단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도와 기초지차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 현물, 현금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 남양주시 예산분석을 했는데 일반회계 5천억을 분석했는데 사회적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6백억 정도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공시장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을 개발하는데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은애 단장〉

보완하고 연구할 부분은 비화폐적활동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들, 그리고 사회적경제무역이 성장하면서 지역단위의 화폐적, 비화폐적 교환의관계들이 만들어져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경제조직을 평가할 때 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포괄하게 되면 소비를 줄여주는다양한 방식들을 적정한 소비운동이라는 것 그런 개념을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개념을 포괄해서 고민해갈 필요가 있다고생각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를 말할 때 기존의 영리 경제조직들안에서 경제원리 즉,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적정성의 경제를 늘 이야기하는데 적정한 고용규모, 적정한 매출방식, 적정한 수익성, 적정한 분배방식 등 이런 적정성의 개념들이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는 생각한다. 현실에서 정책으로 나오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떻게 합의한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이라 봐서 그런 과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갈 것이고 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전상담에 결합을 했었는데 농업법인의경우 행정적 어려움, 사업개발의 어려움, 흩어져있는 자원들을 자원으로 동원해서 내는데 어려움을 충분히 보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하고 저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신에 시민들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도 시민 안에서 이야기 할 때가 되었고 우리 스스로 조차도 공공자금이라든가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눈먼 돈 취급해왔던 태도들을 우리부터 깨나갈 필요가 있다. 연대경제를 위한 소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보아야하며, 자발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시민섹터 안에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 하다.

#### 〈권희태 실장〉

유정규 이사님이 말처럼 과연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봐야할 것이냐, 자본주의폐해를 보완하기위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 거기에 미국식으로 기업을 객관적으로 봐야할 것인가, 화폐적 가치와 비화폐적가치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공동체적어젠더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공무원입장에서 한계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취업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기업을 공동체적 가치로 하고 사회적가치만 추구하는 쪽으로 개념 짓는다면 현실적으로는 수용하기는 어려움으로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야하는 숙제가 아닌 하는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도정전체에서 봐야할 것이고 부처 간, 부서간의 칸막이처진 이기주의를 버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옳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 문제 또한 부처별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깔때기형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부처에서 보조금을 시도에 시달하면 보조금 집행상황을 반드시 정산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을 목적 외 사용하면 그것은 공무원이 신분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코디네이터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일부 사회적기업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도 여러 부처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매일 자체적 토론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처음 태동 되었을 때 보건복지부, 농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산업부, 필요하면 건설교통부까지 포함해서 사회적기업화 할수 있는 보조금을 준다던지 재화나 용역을 납품받을 수 있는 곳을 발굴하자는 이야기는 하지만 현재는 잘 되지는 않지만, 지사님께 잘 전달하겠다. 자활공동체도 나왔습니다만, 자활공동체를 2009년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순간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고, 운영이 부실한 자활공동체도 있어 전환을 하지 않으려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 보조금을 수입으로 하는 사업유형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시장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법은 있습니다만, 법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구매 측면에서 이것을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제공하는 용역이 다른 일반기업체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이 되면, 강력하게 강행할 수 있지만 현재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되고 있고, 가격 면에서 품질 면에서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강제적 사회적기업이 공공구매를 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다.

사회적기업 자체에서 가격과 품질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가져야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고 이것을 '사회의 내발적생태계를 만들어 가야하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한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주요과제로 말씀 드리면서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포럼이라던 가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김제선 이사님의 협동조합 문제와 지역화폐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도차 원에서의 핸들링 하는 것 보다는 시군 차원에서 핸들링이 효과가 있다 고 생각하며,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일정부분의 지원이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숙제로 가져가겠다. 중요한 부분 창업모태지원가정을 운영해야한다는 것, 탈락한 조직이라던 지 사업가들에게 다시 인큐베이팅하여, 다시 이해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은 매우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송박사님께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김성훈 이사님의 말씀처럼 사회적기업도 이제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일정부분 사회적기업들이 출현해서 중간지원기관을 지원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를 보조한다던지, 또는 사회적기업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내공을 키우는데 도움이된다던지, 사회적기업과 시민사회단체도 사회적 스스로 책임을 느낄 수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졌으면 한다.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느슨하게 하는 경우 예산이 잘못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동을 거는 부분이 있어 이해바라며,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제 나

름대로 많은 고심과 중앙정부와 각 부처에서 지원도 있지만 도 자체에도 없는 예산을 상당부문 빼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시군에 전담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담조직을 만들지 못하면 전담 공무원이라도 만들 것이며, 공동마케팅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기 존은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시책법과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 색해 보도록 하겠다.

채수범님 말씀은 유치원 무료제공은 만5세아 무료제공과 관련해서 납품 길을 터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과 연계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취약계 층에 국한하지 말고 이것을 확산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은 송박사님께서 잘되는 시·군부터, 천안·아산 당진 등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장을 만들 면 될 것이다. 이윤배분제한규정의 유연성 확보방안은 알아보도록 하며, 오늘 하신말씀들은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겠다.

#### 〈유정규 이사〉

비화폐적부분을 포함해서 수지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화폐부분을 어떻게 회계에 포함시킬 것인가?'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회계, 사회적 회계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수지를 맞추는데 그것만 빼버리고 화폐적부분만하고있어, 원래 목적과 다르게 회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런 사회적경제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전제 돼야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보조금이 없어도 존립할 수 있는 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보조금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다르게 보아야하며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장으로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포함시켜 순계 해야 하지 그것을 빼고 수지균형을 맞추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논리를 연구자나 사회적경제에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 〈권희태 실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논리적 근거나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고 현재 상 황에서 즐거운 밥상처럼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지원에대해서는 가능한부 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자활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 다.

#### 〈김제선 이사〉

공공분야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송박사님께 너무 많은 숙제를 드려서 죄송하고 **창업모태지원가정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원바라며, 우리도 모여서 '충남손보산업'** 같은 것을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희태 실장〉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농업재해보험을 정부에서 일정부문 지원**하고 있으니 김제선 이사님께서 한번 시도해보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김성훈 이사〉

지역통화에 대한 말을 하고 싶다. 초창기에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부딪혔던 부분은 지역화폐 가입을 권유하면 거의 하시는 분이 없다. 그렇다하더라도 가입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가입하고도 가입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에서 우리가 길들어진 것은 이기적으로 거래해야 이익이 된다는 것으로 부터 모든 관계방식이 맺어져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경제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극복해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인데 사회적책임은 돈 있는 사람만 지는 것은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면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나갔으면 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2001년 세계사회포럼에서 시작하였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세계화된 자본주의경제질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 세계시민사회와 NPO들이 내렸으며 다른 세계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사회적경제에서 연대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민참여예산제도 등 이런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일년 내내 지역사회주민들이 축제처럼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이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